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54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차량간의 충돌사고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므로(신호위반), 과실도표 201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100% 적용 함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하였고,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인 40%, 피청구인 60% 과실적용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으로 판단됨 피청구차량 조수석 충면부 파손 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신호위반)에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직진 주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고(신호위반),
- 만약,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38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은 인정함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노면지시 위반 및 무리한 진행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임 따라서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청구차량 녹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피청구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 동영상상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우측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측면부 파손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피청구차량 신호위반),
-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으므로 기본과실 0% : 100%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A녹색에 직진 진입 적색에 충돌)(수정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녹-적)직진	녹색 직진	참고기준 202 (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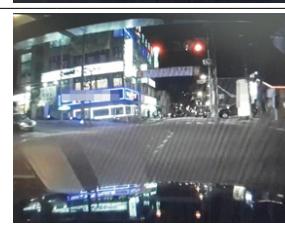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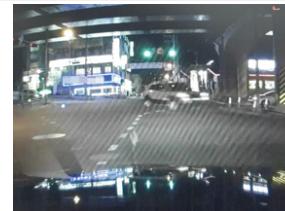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016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2(가)	<p>(가)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 피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 또한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음을 감안하여,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로 결정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주요 쟁점

-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차량과 녹색신호에 후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 변경 후 급출발

결정 근거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됨
-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신호에 진행하였으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동영상에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진입 후 녹색-황색-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교차로 내 상황을 살펴 청구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어야 함
- 피청구차량이 녹색신호로 변경된 후 곧바로 출발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도 (가) 기본과실 30% : 70%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피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5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만일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더라도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은 동일함 즉,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점 및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여부
-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차량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충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는지 의문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실비율인정기준 203도표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102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5 : 6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장소는 동일 폭의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7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므로, 과실비율은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가 타당함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table border="1"> <tr> <td>지방법원</td><td>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td></tr> <tr> <td>사건</td><td>[Redact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차상)</td></tr> <tr> <td>파고업</td><td>1. 주제 2. 등록기간</td></tr> <tr> <td>증명과 부수복본</td><td>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례, 피고인 [Redacted] 일정 200,000원상인판례에 적용 한다.</td></tr> </table>	지방법원	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	사건	[Redact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차상)	파고업	1. 주제 2. 등록기간	증명과 부수복본	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례, 피고인 [Redacted] 일정 200,000원상인판례에 적용 한다.				
지방법원	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												
사건	[Redacted]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차상)												
파고업	1. 주제 2. 등록기간												
증명과 부수복본	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례, 피고인 [Redacted] 일정 200,000원상인판례에 적용 한다.												
	<table border="1"> <tr> <td>발생일시</td><td>2018.11.01 19:45</td></tr> <tr> <td>발생장소</td><td>[Redacted]</td></tr> <tr> <td>사고유형</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이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신호 또는 차시 위반</td></tr> <tr> <td>피해내용</td><td>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및 승객 다량 부상 발생하게 되었다.</td></tr> <tr> <td>사고내용</td><td></td></tr> </table>	발생일시	2018.11.01 19:4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이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차시 위반	피해내용	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및 승객 다량 부상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내용	
발생일시	2018.11.01 19:4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이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차시 위반												
피해내용	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및 승객 다량 부상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내용													

주요 쟁점

-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다를 경우(대소로 구분 가능 도로)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법원의 약식명령서상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있고,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된 점, 청구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한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 우측도로에서 직진	↑ 좌측도로에서 직진	참고기준 205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50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5(나)	<p>(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통행차량이지만,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차량을 후미추돌 함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므로, 피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우선권이 있음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5 동시진입 사고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및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파손됨

결정 이유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각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였고, 청구차량도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41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인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인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동시에 교차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6(가)	<p>(가)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가)의 경우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명백히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양보 운전을 해야 함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일시 정지 위반, 과속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지만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 본 사고는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대로) 동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소로) 양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
-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대소로가 구분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볼 수 있고, 청구차량이 대로 직진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이 소로 직진차량임
- 동영상에 의하면 양차량 선진입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워 동시진입 중 사고로 판단함
- 청구차량 조수석 앞휀다, 피청구차량 운전석 전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진입한 도로가 대로에 해당되고,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16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청구차량은 우측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양보 운전해야 하고,
- 양 차량의 동시 진입사고로 보아야 함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6의 (가) 기본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 동영상상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후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함
- 청구차량의 과실 80% :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 앞범퍼 파손
- 피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파손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모습(피청구차량 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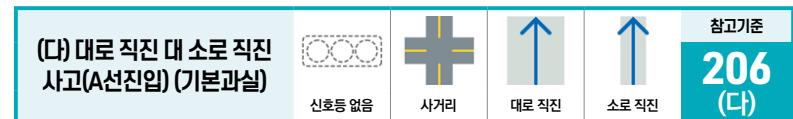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대로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및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 청구차량의 앞범퍼 부위,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 대로에서 직진으로, 피청구차량 소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 통상 대로 진행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 진행차량도 교차로에서는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동영상에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상당히 진행한 시점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가 청구차량 전면부 피청구차량 측면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949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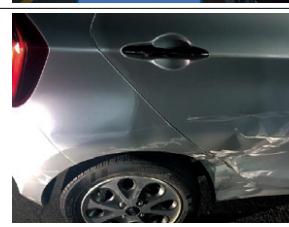
-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다가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차 사고)
 -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심의의 주차차량을 충격함(2차 사고)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편도 2차로의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 피청구차량은 편도 1차로의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후미추돌하였음 •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피양불가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 100%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없으며, •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 따라서, 본 사고는 동일 폭의 도로에서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좌측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 60% : 우측차량인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청구차량 편도 2차로에서 진행(대로)
- 청구차량 조수석 후측면 파손
- 피청구차량 편도 1차로에서 진행(소로)
- 동영상상 청구차량이 선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 통행하였는지 여부
-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

결정 근거

- 사고장소는 동영상상 신호기는 없으나 대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동영상 및 청구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 동영상에 의하면 2차 사고는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소로에서 진행한 피청구차량이 후진입하였으므로, 동시진입한 사고의 기본과실 70%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로 판단함
- 동영상상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1차 사고만 적용하기로 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323 결정비율 A(청구) : B(파청구) = 20 : 80

사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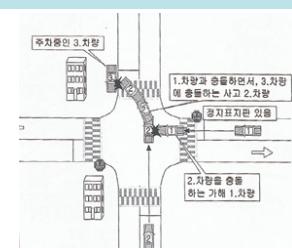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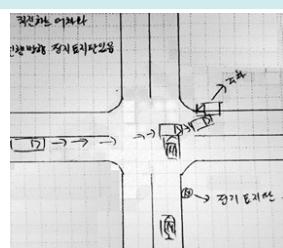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였고,
 - 피청구차량은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구차량의 축면을 충격하고,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재충격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정지표시 위반과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10% : 피청구차량의 과실 90%를 주장함

피청구인



- 피청구자량은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 청구자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청구자량이 우측자량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자량의 과실 50% : 피청구자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시가 없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원인은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임
 - 사고현장 악도상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음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피청구자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자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됨(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가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5조 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청구차량 또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85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청구차량은 천천히 표지를 위반하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음

참고 인정기준 207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자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충돌후미를 충돌한 사고임(청구차량 선진입) •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고,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음 •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해자로 판단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60% 인정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기재됨
- 사고현장 약도 내용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됨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 표지판이 설치됨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천천히 표지판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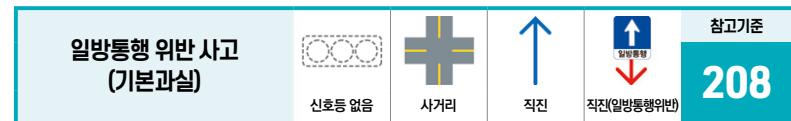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청구차량의 충면부 파손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 천천히 표지가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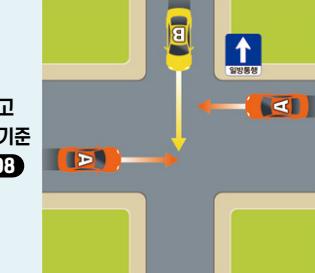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충돌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있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있는 점,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불명확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소로 구분이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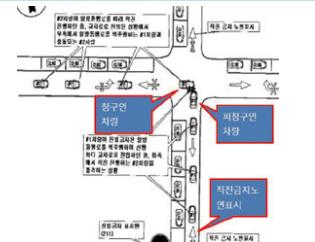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444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8	<p>208</p>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정상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진입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역주행 진입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의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의 일방통행 역주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차량이 과속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로 결정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우측도로에서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은 피청구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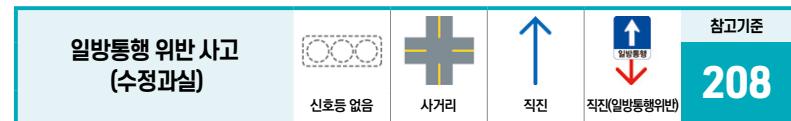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 청구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주의의무가 있고, 피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차량의 과실 일부 인정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175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08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정상 주행하여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피청구차량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였음 청구차량은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차량의 우회전을 확인 후 진행하였는데, 청구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음 후진시 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5% : 피청구차량의 과실 15%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이 사고 발생 전 노면의 표시에 따라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이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후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고,
- 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대형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 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후진경로를 살피지 않고, 후방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 중임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7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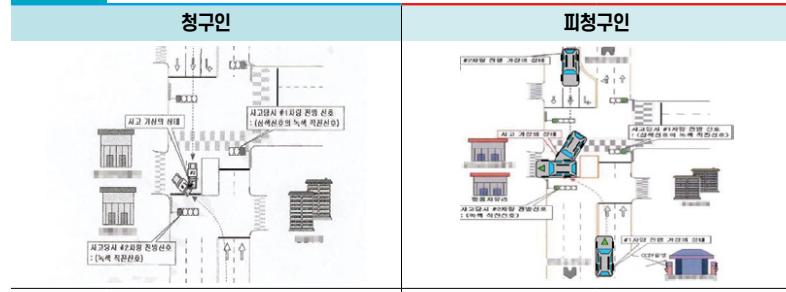
• 전기기 있는 교사로에서 성구사용이 족적전호에 적신아던 봉 윗은편 노도에서 족적전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첨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기본비율 A:B=0:10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 청구인차량은 20km이상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로변경하였고,
-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50% : 피청구 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제작: 대전광역시립도서관 | 출판: 대전광역시립도서관 | ISBN: 978-89-54-1894-1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 상황(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처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청구처량이 과속 또는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실을 과실비율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자랑이 녹색 진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자랑의 과속이나 진로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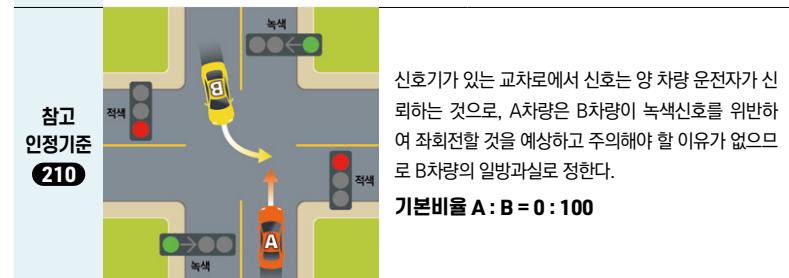
차대차 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745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발생 당시 피청구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였음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함 피청구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만연히 운행하였음 따라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신호위반 및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였음 사고현장은 가로등으로 인하여 밝은 상태였으므로, 청구 차량은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음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종사고 고종사고경찰서 제1차기록 부 모 [] ■ 차량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회원) [] 운전여부 차량 번호 [] 범종 [] (소유자 : []) [] 사고현장 발생일자 2019-10-14 21:50 발생장소 [] 사고유형 ■ 차량 [] 차량단속 [] 차량사용 [] 기타 [] 사고종류 신호 위반 [] 차량 조작 [] 차량 속도 [] 사고현장 상황 조작 여부 [] 합계비용 입금 여부 0 원 부상 3 명 병상 0 명 병상 4,653,000 원 상당 * 1. 차량 위반차량 녹색신호 좌회전 미점등과 고도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

- 피청구차량이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전조등을 미점등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피청구차량 또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운행한 과실이 인정됨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05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2		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 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하였음
•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 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 1 • 사고현장 사진 2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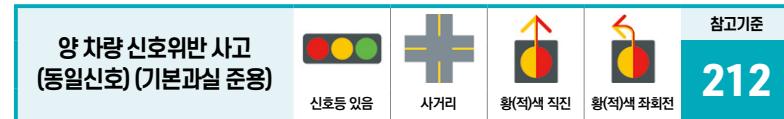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차량 또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89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2	<p>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였음(양 차량의 신호위반)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기좌회전 중이었음 따라서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40%,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주행도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 구간으로 좌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함 비보호좌회전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진행방향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음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파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충돌상황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고 장소의 특성상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나, 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진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14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한 이후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차량 정체로 좌회전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 통과하던 중 피청구차량의 후미 추돌하였음 따라서 교차로에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모습(우측 피청구 차량)
- 녹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의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 녹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유무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변경 즉시 출발하여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꼬리물기식으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3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고자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2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한 이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음 청구차량은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과 과속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주의의무

결정 근거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이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진입 경위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가 전면부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증명됨
-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을 할 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좌회전을 더욱 주의 깊게 해야 하고, 청구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다소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직진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804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우회전 후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 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였음</p> <p>• 신호에 따라 진행한 청구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청구차량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아님</p> <p>• 청구차량의 정상 좌회전을 인정함</p> <p>•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청구차량보다 피청구차량이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상대차량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01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에는 양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판단된 사고임 청구차량은 운전석 측후면을 충격 당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됨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고본사고 접수번호 제 000-000000000000
성 명	<input type="checkbox"/> 고속도로 신호등 위반
주 소	<input type="checkbox"/> 도로 위반
운전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운전 중
사고장소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화빌딩: 6층)
사고일자	2018.03.16 22:15
운행방법	교차로 통과 (좌회전)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회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회전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명	증명: 사항: ○, 부상: ○ 명, 물의: ○ 원
증명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사고개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한 기재 없음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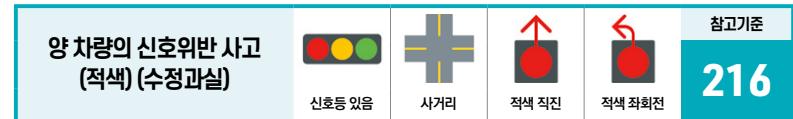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양 차량 모두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직좌신호로 바뀐 이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
- 청구차량의 휠휠다부분이 접촉된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내용만 기재된 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게 되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신호체계의 시간상 차이는 있으나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었음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12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이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신호위반)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음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음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됨 청구차량의 전면부 파손 사진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파손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후 신호체계 변경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임
- 이후 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신호가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이후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좌신호로 변경되며 전 적색신호에 조기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임
-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뀐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양 차량의 동일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사고 발생 당시 직좌신호(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40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8	<p>도표 217에 비해 B차량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좌회전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조사결과 양 차량 신호위반 확정되었음 따라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건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함(5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 사고현장 및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체계 및 양 차량의 진행 경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기재됨
-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황색신호가 상당 시간동안 유지되었고, 청구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이전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동일한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인정되는 점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의 초기에 좌회전 진입하였고,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953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기록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 피청구차량은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피청구 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30km/h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였음 청구차량이 약 7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전면부)
-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전면부)
- 파손부위 사진(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직진차량 대 오른쪽 좌회전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고,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임
- 동영상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속도위반은 확인하기 어렵고, 양 차량 모두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 주의하지 않은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점,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0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과실 40%, 좌회전차량의 과실 60%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고도 위 도표 220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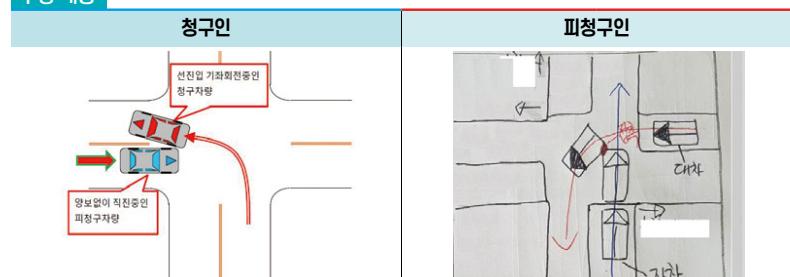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9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을 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양보 없이 직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급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고, 청구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을 피할 수 상황이었음
-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1)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2)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임
- 사고발생 당시 사진 및 파손부위 등으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사고 후 정차 위치 및 충격부위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0에 따라 왼쪽 직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좌회전차량인 청구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및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207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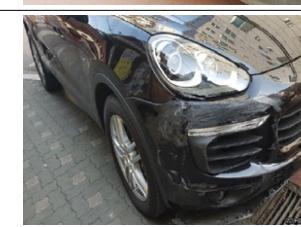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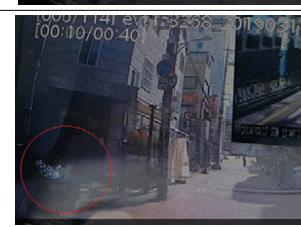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좌회전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과실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피청구차량이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모습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과 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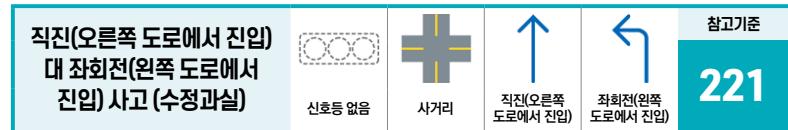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 및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양 차량의 서행 또는 과속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양 차량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였고,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도표 221은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판단한 도표 220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93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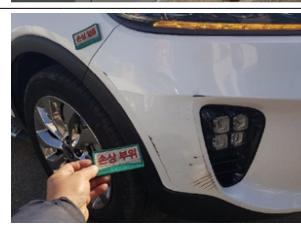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선진입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원쪽 도로에서 급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90% 이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기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전면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한 이후 서행하여 선좌회전하는 모습
-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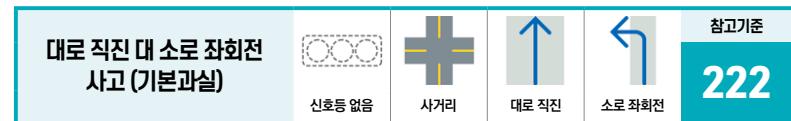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였고, 이후 서행으로 청구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1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30%,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하고 있는데, 본 사고는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이후 서행상태에서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던 점을 수정요소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923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p>•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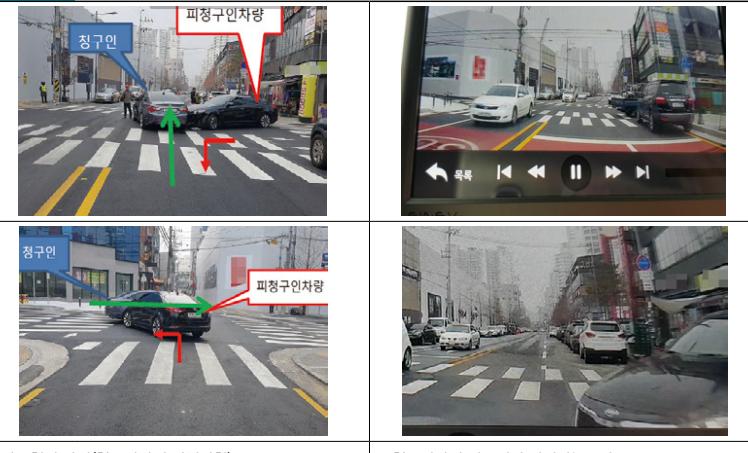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도표 222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정상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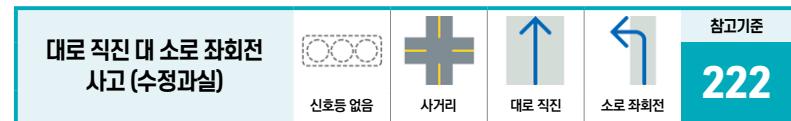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도로인 점, 직진차량 대 좌회전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 점, 양 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2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에게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측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407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본과실률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좌측후미부위를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면서 피청구차량을 치고 지나갔음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대로이고,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소로임)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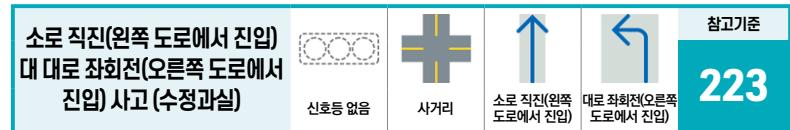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좌회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 차량인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었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22의 기본과실 비율에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350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임 도표 223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감속 없이 직진을 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기좌회전을 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tr> <td>교통사고사실확인원</td><td>도로폭 2 접촉부위 제2019-043504</td></tr> <tr> <td>도로명주소</td><td>□ 신호기 있는 유도통합체(주) (전동면 1)</td></tr> <tr> <td>도로명주소</td><td>도로명주소 : 제1로 대경 번호 : 150-1</td></tr> <tr> <td>사고차량</td><td>차종 : 승용차 (승용차) (스마트 차량)</td></tr> <tr> <td>운행일자</td><td>2019.04.16 17:00</td></tr> <tr> <td>발행일자</td><td>2019.04.16 17:00</td></tr> <tr> <td>사고유형</td><td>■ 교차로 ■ 좌회전 ■ 차대차 ■ 기단</td></tr> <tr> <td>사고장소</td><td>교차로에서의 정상운행</td></tr> <tr> <td>교체내용</td><td>※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1회로 진화된 차량과 차량 42호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 42호 차량을 차량 42호 차량으로 부여하는 행정적 차별을 배제하는 정부정책입니다.</td></tr> <tr> <td>사고개요</td><td></td></tr>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폭 2 접촉부위 제2019-043504	도로명주소	□ 신호기 있는 유도통합체(주) (전동면 1)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제1로 대경 번호 : 150-1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승용차) (스마트 차량)	운행일자	2019.04.16 17:00	발행일자	2019.04.16 17:00	사고유형	■ 교차로 ■ 좌회전 ■ 차대차 ■ 기단	사고장소	교차로에서의 정상운행	교체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1회로 진화된 차량과 차량 42호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 42호 차량을 차량 42호 차량으로 부여하는 행정적 차별을 배제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사고개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폭 2 접촉부위 제2019-043504																				
도로명주소	□ 신호기 있는 유도통합체(주) (전동면 1)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제1로 대경 번호 : 150-1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승용차) (스마트 차량)																				
운행일자	2019.04.16 17:00																				
발행일자	2019.04.16 17:00																				
사고유형	■ 교차로 ■ 좌회전 ■ 차대차 ■ 기단																				
사고장소	교차로에서의 정상운행																				
교체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1회로 진화된 차량과 차량 42호 차량을 교체하여 차량 42호 차량을 차량 42호 차량으로 부여하는 행정적 차별을 배제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사고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 사고현장 사진(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CCTV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23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청구차량의 과실 50%,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 50%를 기본과실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59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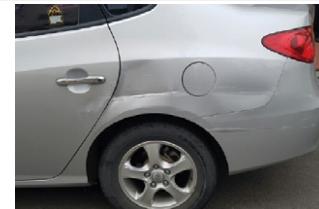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일부 선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으나 우측차량이고, 선진 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후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였고, 좌측차량임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대로에서 통행하는 피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후면)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4는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직진차량의 과실 45 : 좌회전 차량의 과실 55로 정하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위 도표 224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하여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일부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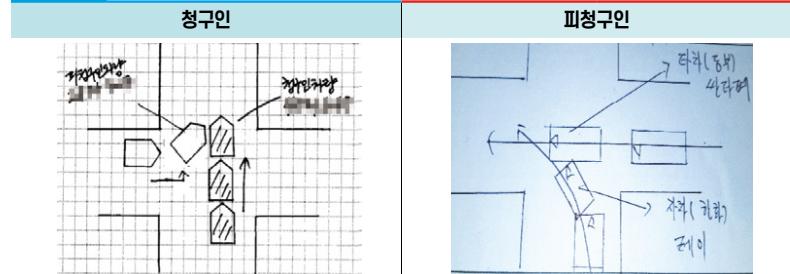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7-06170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쪽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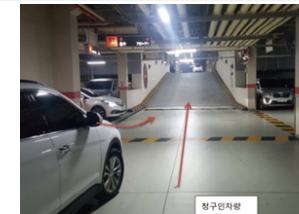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벽면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이 우선멈춤 표지를 위반한 과실을 가산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직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서행 및 선진입 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등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 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 피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우선멈춤 표지 있음)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 및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우선멈춤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서행상태에서 일부 선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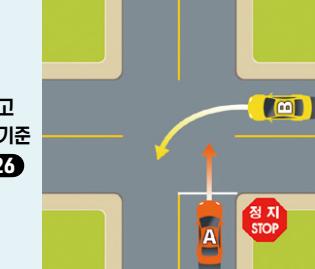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지하주차장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의 주행 통로에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5는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양 차량의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20% :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에서는 위 도표 225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 좌회전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6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양보 표지가 있는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본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이나, 도표 226과 동일한 유형의 삼거리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도표 240과 양 차량의 진행방향이 다른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6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이 직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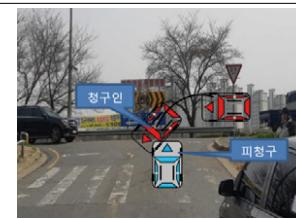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양보 표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정지 표지에 따라 정지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양보를 위해 정지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접수 번호 제2019-027612호
접수일자	2019.03.28 13:20
접수장소	경기도 부천시
접수인	차대차
사고내용	도표 226
사고 경위	도표 226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있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진행방향 표시)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하여 직진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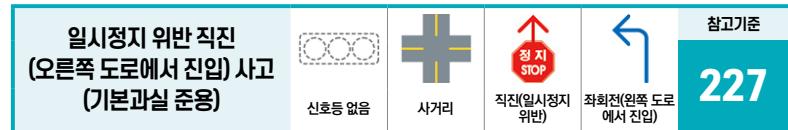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양보 표지가 있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이 양보 또는 일시정지 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진입도로에 양보 표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6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직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7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 3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로 도표 226과 차이가 있으나, 양보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 방향과 피청구차량의 양보를 위한 정지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도표 226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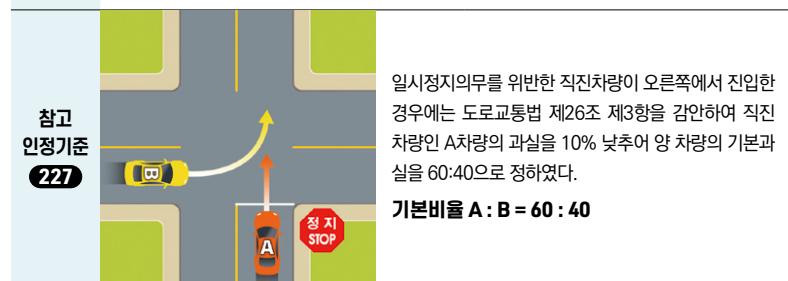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14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였으나,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일시정지 표시 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형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좌회전한 청구차량이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접촉하였고,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있음)
- 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측면 파손)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우측 도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볼 수 있음
- 도로형태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 등 고려할 때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량으로 볼 수 있는 점

결정 이유

-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7은 도표 226과 달리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이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27의 사고 장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방향을 종합할 때 도표 227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나) 직진차량 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사고(B황색) (수정과실)				직진 직진	참고기준 228 (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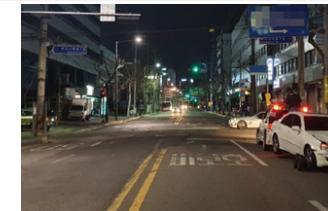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82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28(나)	<p>(나)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A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같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다만, 적용함에 있어 A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가산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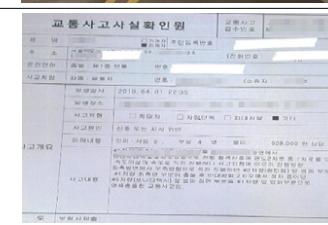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 왼쪽 이면도로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함 도표 228의 (나)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 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과속 및 신호위반 상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 구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왼쪽 도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를 직진(좌, 우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변경과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조기 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적색 신호에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각하여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조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각한 사고로,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조기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28의 (나)는 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진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 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 :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고, 본 사고에서는 교차로에 진입 후 청구차량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점과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조기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87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의 진행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8(다)**

기본비율 A : B = 10 : 9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 무를 위반한 점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원쪽차량은 적색신호에 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정상 진행 중이었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심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악도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표시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 좌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한쪽방향에만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중 신호기가 없는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도표 228의 (다)는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정도가 황색신호 직진한 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중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호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포함)하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90% :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1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22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9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가)	<p>(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범퍼가 떨어진 것을 보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그러나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앞부분 파손)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1)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2)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과 양 차량의 파손부위, 양 차량의 정지사진을 보면,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 및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가)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도로에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이므로,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높아지고,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60% :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229 (나)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2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나)	<p>(나) 우회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고, 우회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서행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내용은 청구차량 주장사항과 동일함 그러나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오른쪽차량인 피청구차량에게 양보 운전하지 않은 청구차량 과실 3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 사진(조수석 뒷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 사진(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판단됨
- 양 차량의 파손부위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약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파손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나)는 (가)의 과실비율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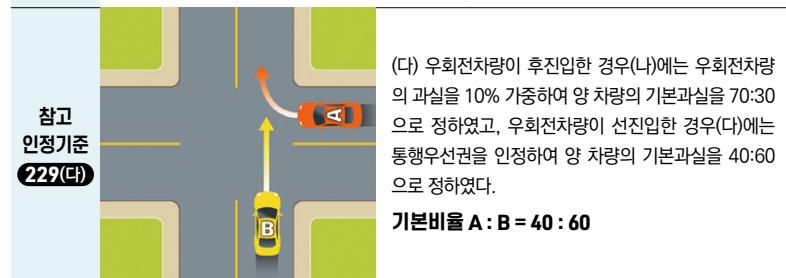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64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비정형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진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본 건은 비정형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표 229의 (다)와 사고 장소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나머지 사고 상황은 도표 229의 (다)와 동일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소로에서 합류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한 청구 차량의 운전석 후면을 충격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정상 진입하고 있었으나 청구 차량이 갑자기 과속하여 진입함</p> <p>• 양 차량 진행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p> <p>• 청구인 청구차량의 우회전을 주장하지만, 청구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음</p> <p>•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과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위가 파손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비정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진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우회전 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비정형 교차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판단됨
- 차량파손부위와 현장사진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현장 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다)는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선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40% : 후진입한 진진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교차로의 구조가 도표 229의 (다)와 일부 상이하나 나머지 사고 상황은 모두 동일하여, 도표 229의 (다)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소로 우회전 대 대로 진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우회전	대로 진진	참고기준 230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008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0(가)**

(가)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진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다만, 우회전 A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하고, 우회전 A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70 : 3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서행,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사항과 동일함 사고 장소는 T자형의 교차로임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및 후면이 파손되었고, 피청구 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소로)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중앙선 있는 대로)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의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볼 수 있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파손된 이유는 피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교차로 진진하였기 때문이므로,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가)는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진진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70% :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3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소로 우회전 대 대로 진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30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264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는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0(나)	<p>(나)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진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다만, 우회전 A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하고, 우회전 A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진진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이었고,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사진(전면부 파손)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측면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소로)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상황,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양 차량의 파손부위 및 최종 정차위치를 고려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양 차량 파손부위 및 최종 정차위치를 고려하면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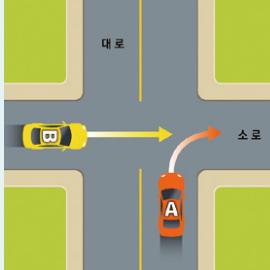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진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나)는 (가)의 기본과실에 소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10% 가중하여, 소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80% : 대로에서 선진입한 진진차량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대로 우회전 대 소로 직진 사고(A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31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663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1(다)	 <p>(다)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우회전 A차량이 대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직진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다)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10%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직진 B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나)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나 소로에서 선진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앞음을 A차량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정지를 주장하지만, 동영상에 청구 차량의 정지를 확인할 수 없음</p> <p>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p> <p>후진입차량인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p>#1 우회전</p> <p>직진</p>

-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청구차량이 계속 우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정지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 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정지를 주장하지만, 동영상에 청구 차량의 정지를 확인할 수 없음
-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 후진입차량인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대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 소로에서 직진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에 의하면 우회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이 사고 전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중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고 전 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1의 (다)는 (가)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을 근거로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80%,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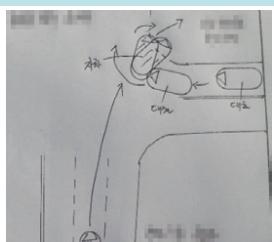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9-04249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여 오른쪽 상가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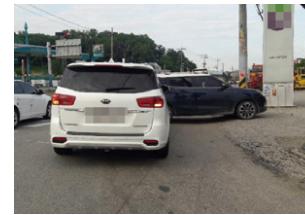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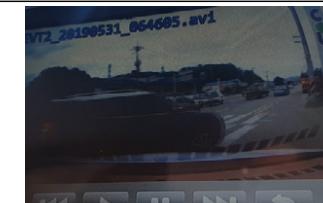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삼거리 우측의 편의점으로 진입 중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돌한 후미추돌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피청구인



-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다가 정상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함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여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한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3-1의(가)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294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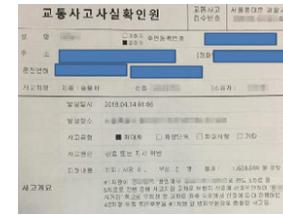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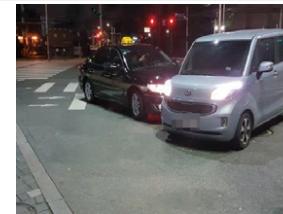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며 오른쪽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3-1(가)	<p>(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녹색신호 직진 후 오른쪽 주유소 진입하려고 할 때,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p> <p>•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노외로 진입하던 중의 사고임</p> <p>•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노외로 진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며 진행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 진로변경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수요소 : 피청구차량의 보행자 신호위반 우회전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였던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3-1의 (가)는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위 도표 233-1의 (가)의 기본과실에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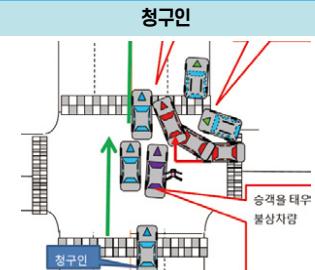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052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심의외 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기본비율 A : B = 60 :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대로에서 직진 중 대우 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하였음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 20%, 대우회전차량인 피청 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을 하였음 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추월을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청구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청구차량이 심의외 택시차량을 피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심의외 택시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33-1의 (나)는 직진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직진한 점, 직진차량이 모든 차로에서 우회전차량 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회전차량은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할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 우회전차량이 오른쪽차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우회전차량보다 과실이 더 중하고 볼 수 있으므로, 직진 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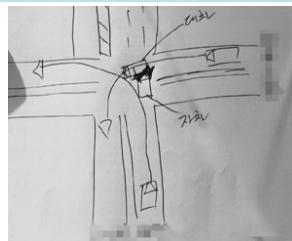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8-06472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 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4	<p>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고려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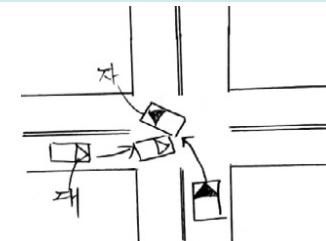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정지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피청구인



-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 구차량이 오른쪽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 청구차량이 일 시정지 없이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차량의 추돌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차량으로 통행우선권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전면부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뒷부분 파손)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사거리, 황색 점멸 1)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사거리, 황색 점멸 2)

주요 생점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설치되었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이고, 양 도로 모두 황색점멸 신호만 있는(신호기 없는 도로 준용)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사고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이 없어, 파손부위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 차량의 진행속도 및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교차로 내에서 선진입이란 교차로에 진입시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영상이 없어 파손부위만으로는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동시 좌회전으로 판단)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왼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오른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380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4		<p>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고려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p>• 눈길의 흥색점멸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면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진입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눈길에서 청구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눈이 쌓여 있어,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흥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동일 폭 사거리에서,</p> <p>•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원료한 시점에, 후진입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축면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상당히 진행한 모습, 이 때 청구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태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주요 쟁점

- 신호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흥색점멸 신호(신호기 없는 상태 준용)가 있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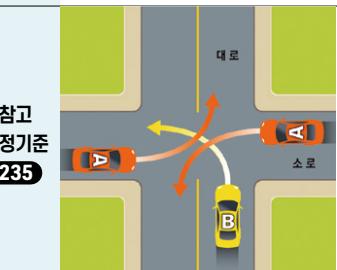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눈이 쌓여 있는 교차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접촉부위 등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함
- 본 사례에서는 위 도표 234의 기본과실비율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00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원쪽의 소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5	 <p>양 차량 모두 좌회전하던 중의 사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B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정차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기좌회전한 청구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은 왼쪽에서 각각 좌회전을 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왼쪽 소로로 진입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뒷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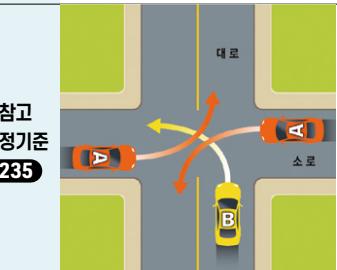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차로 구분이 없는 소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대로로 좌회전 진입하면서 왼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일부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감산 수정요소 없이, 도표 235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음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차량의 운행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좌회전 사고(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좌회전	대로 좌회전	참고기준 23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29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중 원쪽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 차량이 빠른 속도로 소좌회전을 하였다. 		
참고 인정기준 235	 <p>양 차량 모두 좌회전하던 중의 사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B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선진입, 대로 진행, 청구차량의 뒷부분이 충격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진입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서 좌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속도와 소좌회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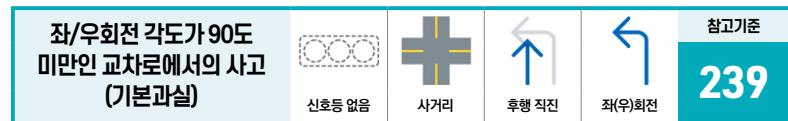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의 대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소좌회전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비정형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이 일부 선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소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비율을 가중하여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71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교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239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하지만, 좌(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장이 없는 경우보다 B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직진 중에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재진입 중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으로 판단하였으나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p>• 1차선 도로의 우측 모퉁이가 예각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으로 넓게 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이고 후방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무과실 사고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
• 양 차량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도어,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전면)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청구차량이 직진 중 사고가 발생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행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에서 미리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방향의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대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충돌과정, 파손부위를 참작하여 결정함

- 도표 239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우)측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좌(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도표 238)보다 좌(우)회전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좌(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444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 또는 그에 준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9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하지만, 좌(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장이 없는 경우보다 B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대우회전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p> <p>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에게 중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p>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은 정상 직진하였으나, 청구차량이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피청구차량의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 과실 사고가 타당함</p>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에서 미리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우회전 정도 및 양 차량의 손상부위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인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여 대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후방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양 차량의 손상부위와 정차 위치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선행상태에서 우회전을 상당부분 완료한 상태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방향에서 뒤따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 피청구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상당부분 완료한 상태인 점, 충돌부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9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우)측으로 선행하면서 좌(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좌(우)회전 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좌(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도표 238)보다 좌(우)회전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좌(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에서는 양 차량의 충돌부위와 사고 후 정차한 양 차량의 위치를 검토하여, 선행 청구차량의 우회전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4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기본비율 A : B = 30 : 7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T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청구차량의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도표 220 준용하여 삼거리일 경우 기본과실이 30:70이지만, 청구차량의 손상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임을 볼 때 청구차량이 선진인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음 삼거리 사고 도표 220 준용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인정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 조수석 전면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좌회전 진행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할 때,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하나, 청구차량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0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40%, 좌회전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0과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삼거리 교차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종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6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주택가 부근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동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형의 주택가 골목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 축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이 확인됨 따라서 도표 221에 청구차량의 선진입과 삼거리 수정요소(회전 차량에 10% 가산)를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장소는 Y자형 삼거리로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청구차량은 우회전 형태로 진입하여야 하는 곳이고, 피청구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넓은 상태임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서행으로 회전하였으나, 청구차량이 교차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동일 폭의 도로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斷됨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를 고려할 때, 양 차량의 선진입과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할 때,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과 양 차량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1은 도표 220의 원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 40%,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 60%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도표 240은 도표 221과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회전차량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있고, 본 사례는 위 도표 240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916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피청구인 차량 좌회전</p> <p>청구인 차량 직진</p>	<p>Chonggi 차량 진행방향</p> <p>피청구인 차량 좌회전</p>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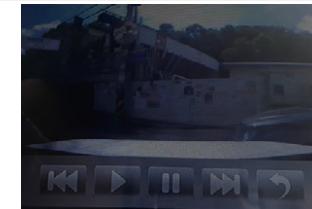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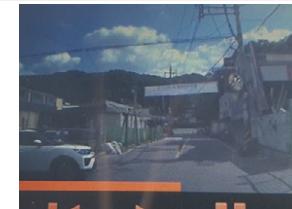
•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따라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사고 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은 기좌회전을 하였으나,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을 늦게 확인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양 차량이 접촉된 사고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피청구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소로 구분이 가능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우측 대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대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중앙선 있는 대로를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명확히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이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인 점,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2는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에서는 도표 222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인 점을 고려하여 회전차량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83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황색점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휀다와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이 손상되었으므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임 따라서 도표 223을 기초로 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좌회전차량에게 기본과실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청구차량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를 보면, 청구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밀려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최종 정차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등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p>좌회전 중 금정차량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액방향으로 임전히 들어서 본 사고현장</p>
	<p>청구차량 최종 정차상태 좌회전 중이던 피청구 차량 최종 정차상태</p> <p>청구차량 진행방향에서 본 사고현장</p>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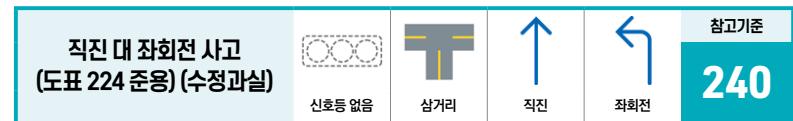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생방 황색점멸 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인 점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3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워, 양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5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23과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630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35 : 65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편도 2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은 소로(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이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였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 차량의 일시정지 및 신진입, 그리고 기좌회전차량임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25%, 피청구차량의 과실 75%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원쪽 직진차량만 신경 쓰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좌회전하면서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대로로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청구차량의 신진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좌회전 대기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다소 급하게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정차 위치)
- 양 차량의 손상 사진(피청구차량은 운전석 측면이, 청구차량은 전면부가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급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대기 후 다소 급하게 좌회전하였음

결정 이유

-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신호기 없는 삼거리 준용)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직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소 급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4는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한 차량보다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소로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5% : 대로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5%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4와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고, 사고 발생 전 다소 급하게 좌회전한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360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일시정지표시가 한쪽에만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기본비율 A : B = 10 : 90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충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정상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여기에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충면 충격하였음을 감안 할 때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동일 폭의 교차로 진입시 양 차량 모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정지' 표지가 있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정지' 표지가 없음)

- 동영상(청구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속도 및 전방주시의무 해태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속 없이 계속 직진하였던 사정, 양 차량의 충격부위와 도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한 이후에도 감속 없이 계속 직진하였던 사정, 양 차량의 충격부위와 도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5는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5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도표 240을 기초로 하면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서도 서행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190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인차량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30 : 7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 중 왼쪽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교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은 마주오는 스타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어 직진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직진에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 청구차량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에서 직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도로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었던 점과 청구차량이 우회전 차량인 점,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가)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도로에 진로를 변경형태로 진입하는 것으로, 주의의무가 높아지는 점과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상황을 고려하여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29와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3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기본비율 A : B = 20 : 80</p>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골목길 삼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 왼쪽 3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주도로에서 직진하였고, 측면이 충격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정상 주행 중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피양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 동영상(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전면부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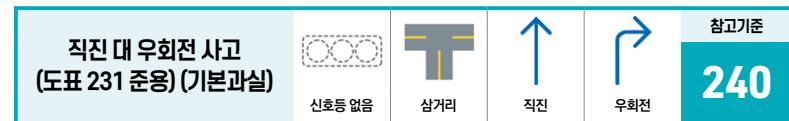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나타난 충격과정,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가)는 소로에서 우회전한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직진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고, 도표 240은 도표 230의 (가)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인 경우이므로, 회전차량인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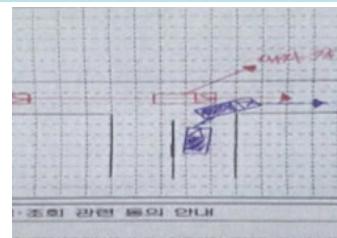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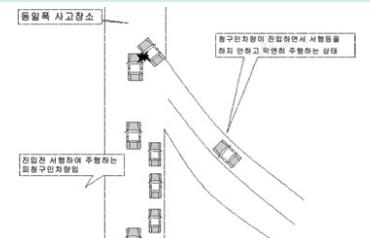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457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기본비율 A : B = 60 : 40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기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운전석 앞도어부터 파손되었는데, 이러한 청구차량의 손상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될 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뒤늦게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 장소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청구차량의 우회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대로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 중앙선이 없는 소로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전면부가 손상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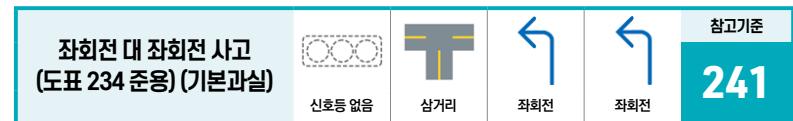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 및 파손부위 등 고려할 때 양 차량 선진입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1의 (7)는 양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우회전한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대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31과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이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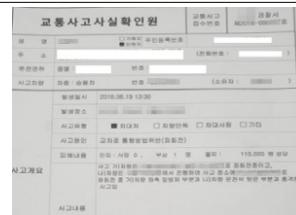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8-05599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1 기본비율 A : B = 40 : 6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회전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또한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측면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차량 상호 간의 사고(도표 234~236)를 그대로 적용한다.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대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기좌회전 왼로 중인 청구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청구차량이 급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서행 및 선진입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교통사고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부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진행도로는 동일 폭의 도로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고, 도표 241은 도표 234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고,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나 양 차량 모두 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34와 동일하게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2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941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아파트 입구인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1**

기본비율 A : B = 30 : 7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회전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또한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측족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차량 상호 간의 사고(도표 234~236)를 그대로 적용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대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 중 아파트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이 대로로 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선진입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 당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 실 사고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임 도로여건상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순위는 맞으나, 청구차량 또한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및 신호위반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 선진입 인정하기 어려움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은 인정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아파트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아파트 입구에서 대로로 좌회전을 하였던 점, 도로현황과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고, 도표 241은 도표 235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고,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지만 양 차량 모두 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35와 동일하게 기본과실비율을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의 아파트 진입로(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도표 2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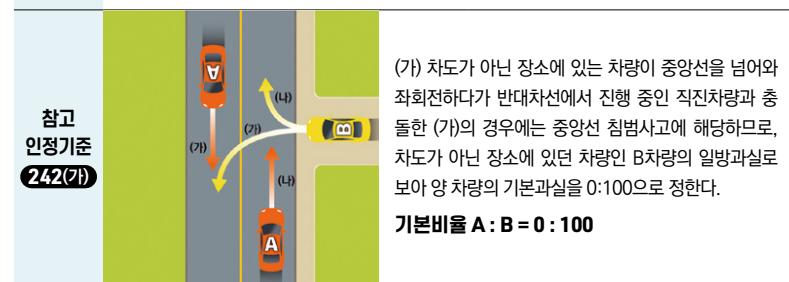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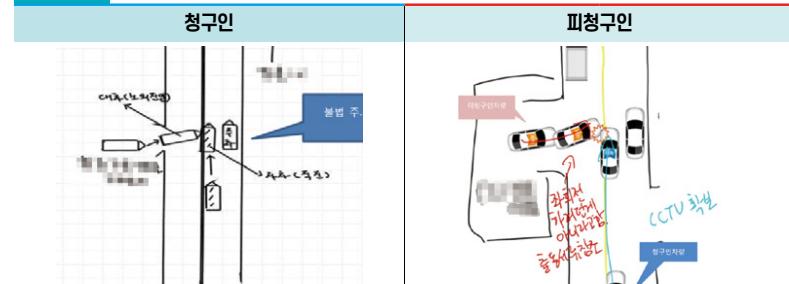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887 결정비율 A(청구):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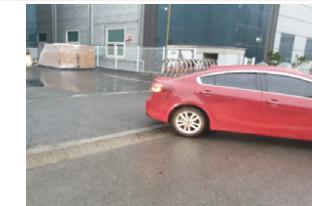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좌측 노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노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후진으로 주차장 진입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을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려던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차량을 접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불가능한 사고임
-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피청구차량의 정차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의 후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왼쪽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의 후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좌측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사고경위와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2의 (가)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보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도로로 진입하다가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55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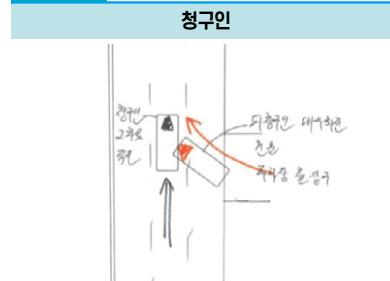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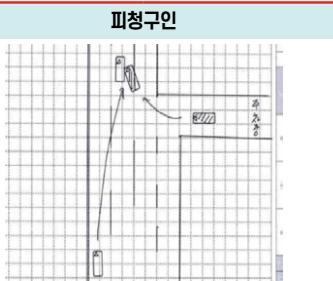
(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한 (나)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오른쪽 주차장에서 대로로 출차 후 대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뒷부분이 손상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와 서서히 2차로로 진입 중 1차로의 청구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접촉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 선진입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뒤늦게 진입하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 진입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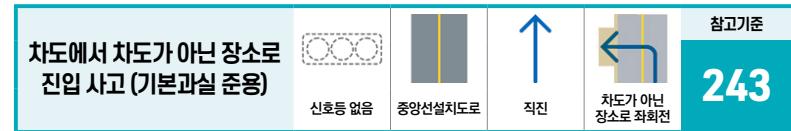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진로변경 중이 아니라 직진 중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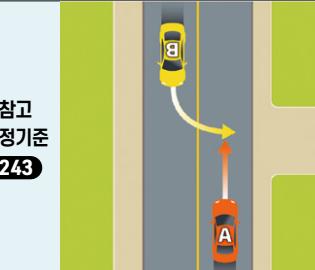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대우회전하여 진입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2의 (나)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 후 도로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2차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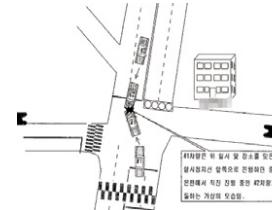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0836	결정비율	A(피청구):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없는 장소로 진입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3	 <p>신뢰의 원칙상 중앙선을 침범한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B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A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어긋난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므로, 도표 214에 따라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 앞으로 청구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노외로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을 예측하고, 피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경우	□ 기록물 ■ 증언물 확인번호
주소	광주광역시 (면동면면도로)
운전면허	증명·제1종 보통 면허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11A (소유자:)
발생일자	2017.10.18 22:00
발생장소	광주광역시 (면동면면도로)
사고유형	■ 회전과행 □ 추돌과행 □ 충돌 □ 기타
사고현장	안전운전과부부법
도표내용	인원: 사상 0, 부상 2 명 속도: 한정
사고개요	※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로 전통적인 운행방법에서 벗어난 경우 경각심이나 주의의 부족으로 인해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청구차량이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사고 발생 모습)

- 사고현장 약도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맞은편 일시정지선 앞쪽으로 진행'(역주행)하였다고 기재됨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이 불가한 곳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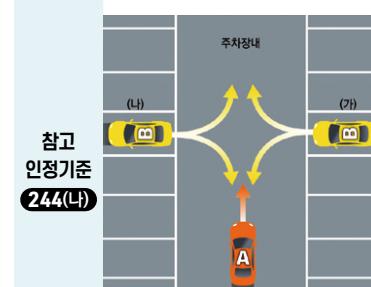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할 수 없는 노외로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3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지 않고, 맞은편 직진 차량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할 수 없는 장소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43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688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통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기본비율 A : B = 25 : 75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주차장 내 통로를 직진 중 후진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후진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임시로 달리지 없으나, 청구차량은 진입이 불가한 곳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후진 출차한 장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후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지상주차장에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근접거리 후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통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지상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통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하여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4의 (나)는 후진 출차하는 차량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5%, 후진하여 출차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주차장 통로를 직진 중 왼쪽의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972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 눈이 내린 경판길에서 피정구사당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사고로 정시하고 있던 정구사 량을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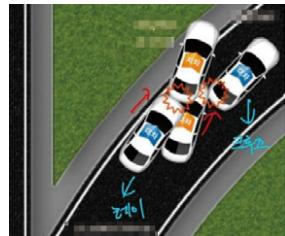


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인 도표 505에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20%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8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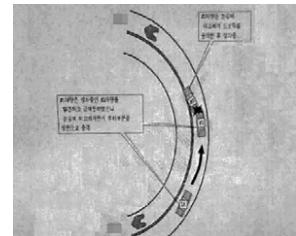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선행하는 심의와 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차량 안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던 중 약 2~3분 경과 후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빙판길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2차 사고는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분이 지난 후에 발생되었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고번호	경찰서
별명	□ 여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소속	□ 경찰서 <input type="text"/> 신고번호 <input type="text"/>		
운전면허	종별: 제한 <input type="checkbox"/> 특별 <input type="checkbox"/> 번호: <input type="text"/>	□ 운전면허 <input type="checkbox"/>	
사고현장	위치: <input type="text"/> 일자: <input type="text"/>	□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증명장소	□ 증명장소 <input type="checkbox"/>		
사고증명	□ 진술 <input type="checkbox"/> □ 운행단속 <input type="checkbox"/> □ 대상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고복면	□ 사고복면 <input type="checkbox"/>		
피해내용	□ 피해내용 <input type="checkbox"/> □ 부상 <input type="checkbox"/> □ 사망 <input type="checkbox"/> 등 상황 <input type="checkbox"/>		
사고요약	□ 사고요약 <input type="checkbox"/> □ 신고처방부 <input type="checkbox"/> □ 운전면허증 <input type="checkbox"/> □ 운전면허증부여 <input type="checkbox"/> □ 운전면허증부여증명 <input type="checkbox"/>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자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자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모습)
 - 사고현장 사진(선행사고로 정차한 청구차량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에서 훈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시간은 시야의 제한이 없는 주간임

결정 이유

- 눈이 내린 빙판길에서 청구차량이 선행사고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은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장소와 사고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5는 일반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추돌사고(2차 사고)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2차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피추돌차량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505에 비하여 추돌차량의 과실을 20% 기산하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편도 1차로의 빙판길에서 청구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33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왼쪽의 본선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6	<p>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 화물차량을 보내고 서서히 합류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 차로로 합류를 시도하는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손상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진행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본선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차로로 합류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방향지시등 점등하였고, 합류순서에 따라 합류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합류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6은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차로감소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본선 차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24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로 감소 도로(합류)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4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845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본선차로로 합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6	<p>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선행차량을 따라 본 차로로 합류 중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좌측 후방에서 주행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합류를 인지하였으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제동도 없이 진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2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진행 중인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왼쪽 앞碜다 부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뒷부분이 손상된 사고임 청구차량의 진행차로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급진입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행하던 합류구간의 모습, 노면에 양보 표지가 있음)
- 동영상(청구차량이 급하게 합류 중 직진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각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양보표시가 있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의 급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음에도 급하게 합류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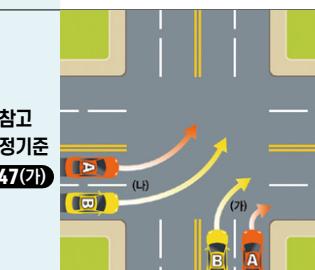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차로가 감소하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합류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 점, 청구차량의 진입속도와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6은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고, 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6에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A우회전(오른쪽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오른쪽차)	우회전(왼쪽차)	참고기준 247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0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가)	 <p>(가)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 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우회전이 가능한 3,4차로에서,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청구 차량이 정지해 있었으나, 피청구차량이 적재함으로 청구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계속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p> <p>•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추월 중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을 근거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4차로에 근접하여 우회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 양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전면, 피청구 차량 조수석 뒷부분)

주요 쟁점

-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임(청구차량 : 4차로 [우회전 차로], 피청구차량 : 3차로[직진과 우회전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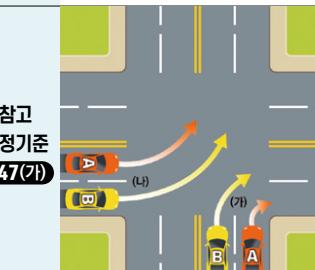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다소 소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 구차량이 오른쪽 차량인 점, 충돌 전 청구차량이 후행하다가 포켓차로 확장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인지할 가능성이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과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경감하여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원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다소 소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가)에 따라 과 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A우회전(오른쪽차))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오른쪽차)	우회전(왼쪽차)	참고기준 247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9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가)	 <p>(가)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 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차 중 원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1차로에서 소우회전을 하면서, 실선을 침범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2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중 후행 우회전하던 청구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원쪽의 차량을 확인하고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추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이 확인됨)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이 확인됨)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2개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임
- 양 차량의 최종 정차사진을 보면, 1차로의 피청구차량이 2차로 방향으로 소우회전하였음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후 정차한 사진에 의하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경감하여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30%, 원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차량인 점과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가)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2개 차로 동시 좌회전 사고(A좌회전(왼쪽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좌회전(왼쪽차)		좌회전(오른쪽차)	참고기준 247 (나)
---	--------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82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양 차량 모두 상대차량과 근접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나)	<p>(나)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 좌회전시 원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거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동시 우회전 중 사고(기)에 비해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처럼 소좌회전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혹은 소좌회전 시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 후방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1,2차로는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임)
- 동영상(양 차량이 동시 좌회전 중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휀다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또는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1,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또는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을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양 차량은 좌회전이 가능한 1,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서로 근접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차량이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나)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47의 (기)의 동시 우회전 중 사고에 비해 바깥쪽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경감하여,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왼쪽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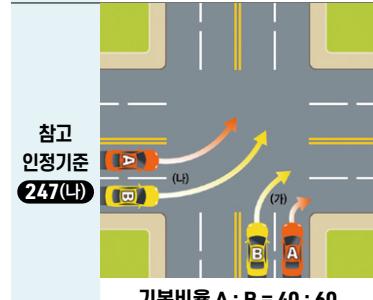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56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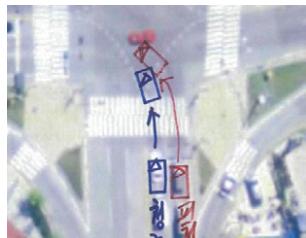


(나)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니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동시 우회전 중 사고(가)에 비해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주장 내용

첨구이



-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쌍방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면서 소좌회전 형태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으므로,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반교실성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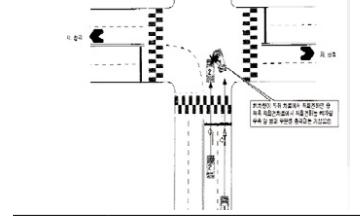
피첨구인



- 청구처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처량은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 청구처량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처량의 무 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경찰서 고 소 접수일	당일 경찰서 제출일 2010-08-06
국	영	경찰서 고소 접수일	
주 소	경찰서 고소 접수일		
운전자			
사고장	성명 : 박재우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012345678	(소속) : 경찰서 1
	출생일자 : 2010.07.15(20)		
운전면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운전면허 <input type="checkbox"/> 운전기사면허 <input type="checkbox"/> 그 외		
사고장소			
사고내용	<input type="checkbox"/> 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고의적 행위 <input type="checkbox"/> 사고방법(선택)		
사고증명	고의적 행위로 인한 사고(선택)		
고지내용	경찰서 고소 접수일		
사고장소	국	영	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이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1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차량이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소좌회전

결정 그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시실황이임 및 동영상에 의하면, 2차로의 피첨구차량이 소진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 2차로의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나)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암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47의 (가)의 동시에 우회전 중 사고에 비해 바깥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경감하여,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2차로의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나)를 기초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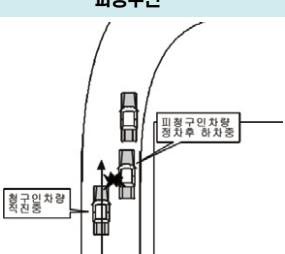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열린 문 접촉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갓길포함) 후행 차량 문 열린 차량	참고기준 248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93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우측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면서 왼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8	 <p>문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이면도로를 서행하며 주행 중 오른쪽에 주정차된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막연히 개문하였고,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원쪽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사고이므로, 청구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은 직진 중이고, 피청구차량은 도로의 오른쪽에 주정차한 상태임)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여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개문으로 도어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동일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 중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한 피청구차량이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면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석 문을 연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사고 장소는 이면도로이므로, 청구차량도 주차된 차량의 개문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행해야 하는 점, 동영상에 확인되는 개문 시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8은 주정차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후행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개문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이면도로를 직진 중 오른쪽에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개문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43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후 도로 방향으로 문을 열면서 도로를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8	<p>문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로 쪽으로 급하게 개문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며,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 이 사고는 전형적인 개문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동일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개문한 피청구차량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우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청구차량이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개문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고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이후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 개문을 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의 비상등을 보았을 때 청구차량이 이를 주의했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8은 주정차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후행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개문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주행도로 방향으로 다소 급하게 개문한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8을 기초로 피청구차량의 과실비율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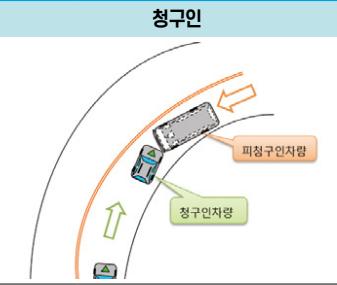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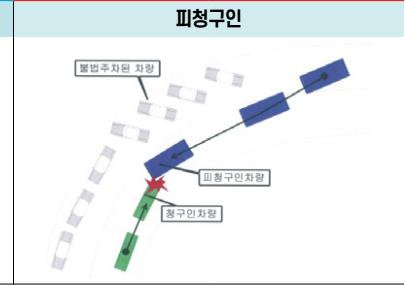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역주행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4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328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	 <p>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직진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A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상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범퍼와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1차로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 마주오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차량도 전방주시 및 진로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범퍼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1)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2)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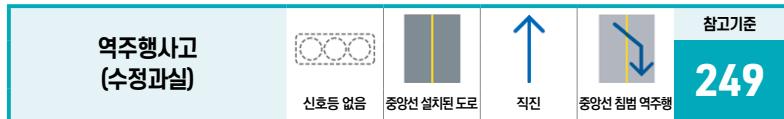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오른쪽의 공간 및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는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 0%, 중앙선 침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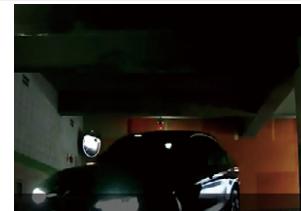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68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주차장의 진출입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청구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	<p>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직진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A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주차장 출입구로 올라가던 중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정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청구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경광등으로 인해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청구차량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아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고통사고 접수번호
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통사고 <input type="checkbox"/> 부상사고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로 123 (전화번호 : 010-1234-5678)
운전면허	증명서 1종 보통 번호 : 123456789012345678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123456789012345678 (도록자: 12345)
발생일자	2018.06.06 15:02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차장)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주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환경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문화의무위반
피해내용	인상 / 차량 A 부상 1 명 / 물상 1,300,000 원 / 경상상
사고개요	#12345 차량 A는 60%로 침입하여 B 차량을 충돌시켰습니다.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중앙선침범이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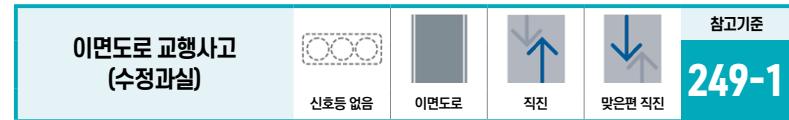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올라가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면 청구차량은 전조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으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의 주행을 인지하기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는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 0%, 중앙선 침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49를 기초로 하고,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으로 인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749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운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1	<p>좁은 도로 폭이나 도로 양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차량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 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방향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교행하다가 접촉(1차)한 이후 청구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2차)한 사고임 사고 장소는 협소한 도로이므로, 상호 양보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양 차량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행 중 교행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이면도로에서 좌우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확인하고 피양하던 중 청구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양 차량이 이면도로를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교행 중 서로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피청구차량과 충격하여 운전석 앞 부분이 손상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피해차량과 충격하여 조수석 앞 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좁은 도로 폭의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수요소: 청구차량의 가상의 중앙선 침범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을 하면서도, 사고 전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거나 서행을 하지 않았음

결정 이유

-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에게 양보운전 의무가 있는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않고 교행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교행을 하면서도 사고회피를 위해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1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하여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 차량의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50% :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9-1을 기초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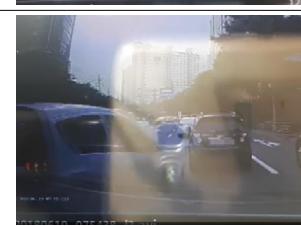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951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청구차량을 추월 후 다시 직진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0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뒤에서 앞으로 추월하는 도중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장소의 왼쪽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추월하여 진행할 것을 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며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추월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며, 추월 완료 후 진로변경 중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추월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추월 후 청구차량 바로 앞으로 급진로변경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 후 선행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는 후행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이후 직진차로로 급히 복귀하면서 직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선행하던 청구차량에게 피청구차량의 추월 후 급진로변경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피청구차량이 추월한 장소는 버스전용차로로 추월이 금지된 장소로 확인됨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좌측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청구차량을 추월한 이후 직진차로로 급히 복귀하면서 선행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선행하던 청구차량에게 피청구차량의 추월 후 급진로변경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후 청구차량 바로 앞으로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06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0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정상 진행 중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고 피양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원쪽으로 진로변경한 것은 맞지만, 교차로 이후 왼쪽에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 도로 구조이기 때문에 피청구차량은 새로 생긴 차로에 진입하고, 오히려 청구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차로를 변경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던 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 후 선행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는 후행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에 대한 청구차량의 인지가능성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추월하다가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도로구조와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전 선행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진입하여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도로구조와 충격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으로서도 다소 선행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행위는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사고 직전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표 250을 기초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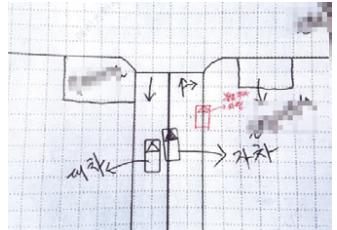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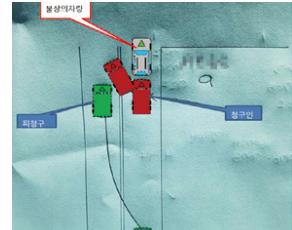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양 차량 추월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참고기준 250-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171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진행 중 선행하던 청구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p>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방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전방차량인 B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중앙 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운행이므로 길을 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 청구차량이 앞에 정차 중이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 중 중앙선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점유하며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추월 중 청구차량이 급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후행차량, 청구차량은 선행차량이고,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은 운전석 측면이, 피청구차량은 조수석 앞부분이 손상됨)
- 동영상(후행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모습)
- 동영상(선행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모습)

주요 징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선·후행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 선행하던 청구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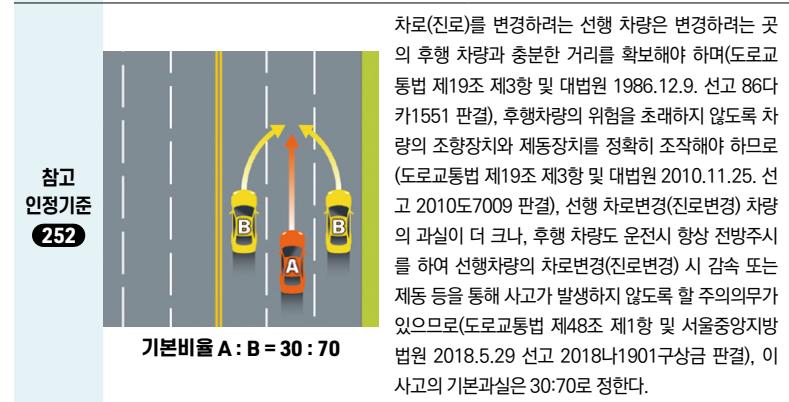
-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 침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0-1은 기본적으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에 비해 주변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후방차량의 과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점, 전방차량은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으로 추월 중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0-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354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접촉한 사고로,</p> <p>피청구차량의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p>	<p>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려는 상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선진로변경한 청구차량이 가속하여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2차로에서 선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일방향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다가 진로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49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3→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을 확인하고 급제동 및 피양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도표 252를 적용하고, 피청구차량이 2개 차로를 변경한 점 감안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다차로 변경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여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다차로 변경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진로를 변경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3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동일방향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순간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정지하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	<p>기본비율 A : B = 30 : 70</p> <p>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진행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의 실선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앞범퍼와 피청구차량의 뒷범퍼가 충돌한 사고로,</p> <p>• 도표 252에 의해 피청구차량은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 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3차로에 진입 후 4차로로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보고 정차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한 이후 청구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 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3차로 진입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이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황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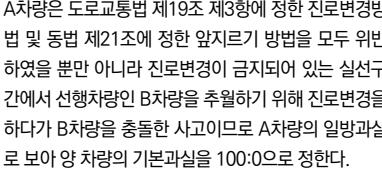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이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으로 인해 급정지하여,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나,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였던 점, 4차로에서 진행하던 심의외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정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는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차량도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순간 선행차량의 진로변경으로 급정지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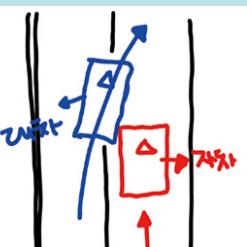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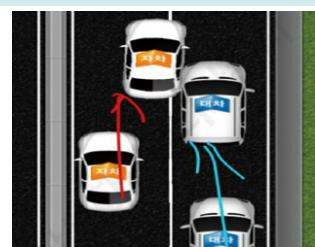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실선 추월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52-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8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에서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1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 및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B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터널 내 2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상 주행 중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추월 후 급진로변경 중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속 피청구차량이 급추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터널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직진중인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 후 2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후행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진로변경하여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 후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2차로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후행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추월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추월 후 급진로변경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1은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과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선행직진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실선 추월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실선 추월	선행 직진	참고기준 252-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4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선구간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의 실선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후 고의 급정지하여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실선구간에서 차로 변경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추돌당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동영상(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추월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후행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진로변경하여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시간과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1차로를 상당시간 동안 서서히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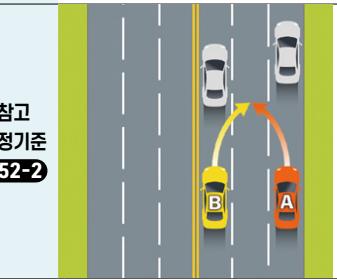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1차로 후방에서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진입 후 다시 1차로의 청구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추월 후 청구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상당시간 동안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1은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과 동법 제21조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모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구간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하다가 선행직진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실선에서 추월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후행하다가 실선구간에서 선행 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청구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1을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의 진입시간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에 대한 청구차량의 인식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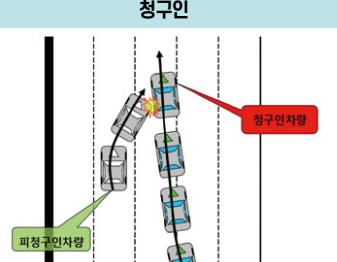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835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2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50 : 5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선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선진로변경이 확인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과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선진로변경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양 차량 책임 비율을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2는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왼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이므로, 도표 252-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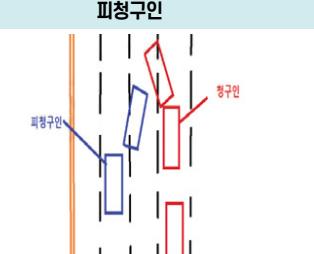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진로변경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8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2	 <p>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선진로변경을 원료하였으나,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후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진로변경을 원료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원료하였으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 상당부분 진입한 상황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무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정체차로 급진로변경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어서,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2는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왼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의 동시진로변경 사고이므로 도표 252-2를 기초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1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방향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p> <p>•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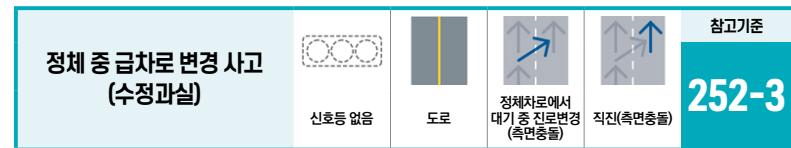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의 급진로변경에 의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기하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여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046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한 상태에서 2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근접거리에서 급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을 피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 진로변경 사고이지만,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손상)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3차로 일부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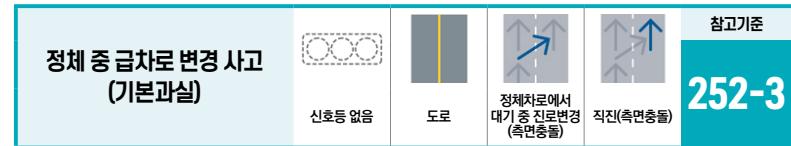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한 중 2차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2차로를 직진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기초로 하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진행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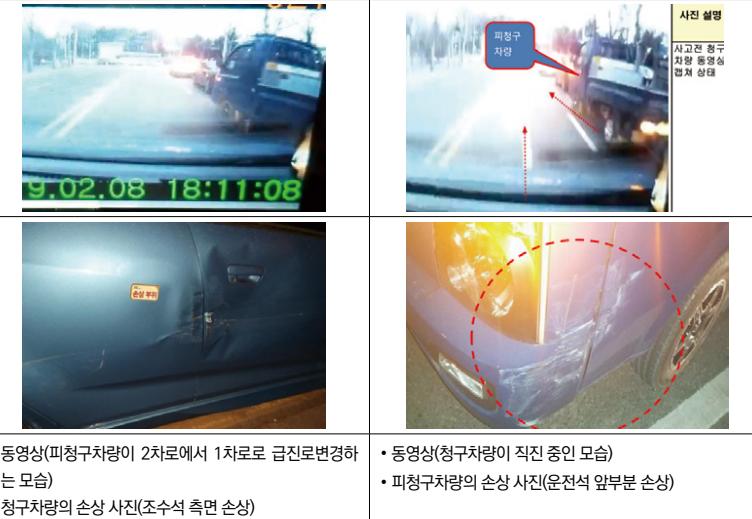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6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3	<p>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서행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빠르게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우측 도어 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사고이나, 청구차량도 빠르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정체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진로변경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을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정체차로인 2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정체차로에 있던 피청구차량이 지나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차량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3은 정체차로에서 진로변경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직진차량으로서는 진로변경 차량이 정체구간 등에서 대기 중 갑자기 진로변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진로변경차량의 앞부분으로 직진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직진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017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정구차량이 안전시내를 침범하여 1차로로 신입하려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신로변경하는 피정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자동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10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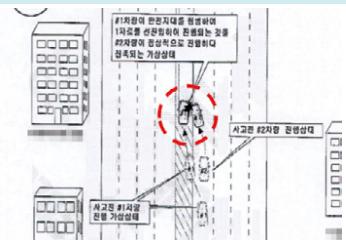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첨구이



-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원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과실과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피첨구인



- 피청구자차량이 정상 작진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 중 발생한 사고임
 - 경찰서 조사 결과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시고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모습)
 - 동영상(띠첨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교통사고실무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 직진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직진 중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추월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왼쪽 차로에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후행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직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7)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후행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주행을 한 차량이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선행차량은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안전지대 통과하는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추월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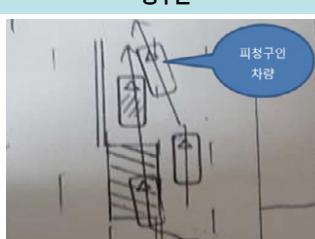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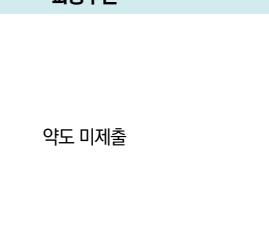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A안전지대 벗어난 후)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970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4(나)	 <p>(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원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파청구인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원전히 통과한 이후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하면서 진로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중앙선 넘어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서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 및 안전지대 침범하여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였으므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포켓차로 생성지점을 지나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이후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로변경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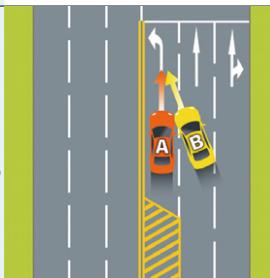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 장소는 안전지대를 지나 포켓차로에서 발생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사고 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포켓차로가 생성된 이후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나)는 안전지대를 원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표 252-4의(기)와 달리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안전지대 통과 후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도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직진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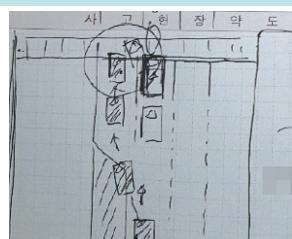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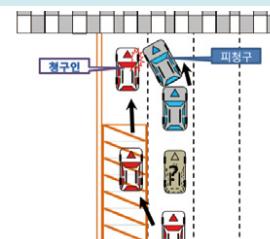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벗어난 후)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도로	후행 직진	선행 진로변경	참고기준 252-4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875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1차로(포켓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2-4(나)	 <p>(나) A차량이 안전지대를 원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B차량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반면, A차량이 직진 중임에도 A차량의 불법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A차량의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정체 중인 2차로에서 실선구간을 넘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차로에서 급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청구차량이 안전지대 통과한 이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동일방향의 후행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이후 안전지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로변경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횡단보도 부근 진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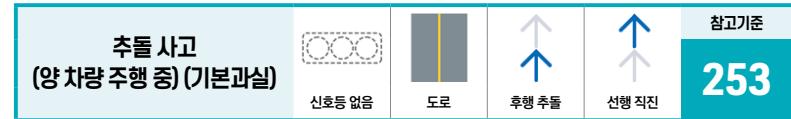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안전지대 벗어난 상태에서 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정체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포켓차로(1차로)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이후 포켓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2-4의 (나)는 안전지대를 원전히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와 달리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달라 기본과실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안전지대 통과 후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도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안전지대를 통과한 불법행위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직진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한 이후 직진을 하다가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2-4를 적용하여 과실을 판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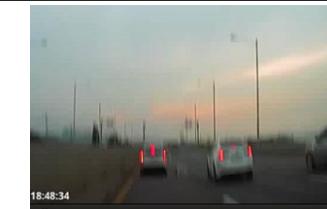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64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0 : 0
사고내용	•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3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급 정지하여 청구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차량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도로의 돌발상황으로 선행차량들이 급정지하자, 피청구차량도 급정지하였으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추돌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후행 중 선행 피청구차량이 정지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 동영상(도로 전방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이유 없는 급정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도로 전방에 출현한 강아지 때문에 급정지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는 인정될 수 없음

결정 이유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도로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자,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은 도로에 출현한 강아지로 인하여 급정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3은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점과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근거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 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29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자 2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3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이유 없이 도로에 정지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도로에서 심의외 차량이 급히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던 중 뒤따르던 청 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로 볼 수 있으며,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였던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교통사고사실확인원</td></tr> <tr> <td>교통사고 접수번호</td><td>제2019-039292</td></tr> <tr> <td>성 명</td><td>○○○○○ 주민등록번호</td></tr> <tr> <td>주 소</td><td>(주소)</td></tr> <tr> <td>운전면적</td><td>종별: 자동차 보유면적: (면적)</td></tr> <tr> <td>사고처량</td><td>차종: 승용차 번호: (소유자: ○○○○○)</td></tr> <tr> <td>발생일자</td><td>2019.04.29 11:00</td></tr> <tr> <td>발생장소</td><td>(장소)</td></tr> <tr> <td>사고유형</td><td>■ 차대차 □ 차량상해 □ 차체사상 □ 기타</td></tr> <tr> <td>사고현장</td><td>안전거리 확보 불찰(불법변도)</td></tr> <tr> <td>화재나물</td><td>의상: 차량: 부상: 1 명 상상</td></tr> <tr> <td>사고개요</td><td>#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td></tr>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03929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운전면적	종별: 자동차 보유면적: (면적)	사고처량	차종: 승용차 번호: (소유자: ○○○○○)	발생일자	2019.04.29 11:00	발생장소	(장소)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량상해 □ 차체사상 □ 기타	사고현장	안전거리 확보 불찰(불법변도)	화재나물	의상: 차량: 부상: 1 명 상상	사고개요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03929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운전면적	종별: 자동차 보유면적: (면적)																								
사고처량	차종: 승용차 번호: (소유자: ○○○○○)																								
발생일자	2019.04.29 11:00																								
발생장소	(장소)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량상해 □ 차체사상 □ 기타																								
사고현장	안전거리 확보 불찰(불법변도)																								
화재나물	의상: 차량: 부상: 1 명 상상																								
사고개요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모습) 동영상(정지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추돌하는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가 확인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피청구차량이 급정지하였던 상황이 확인됨 																								

주요 쟁점

-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요소: 피청구차량의 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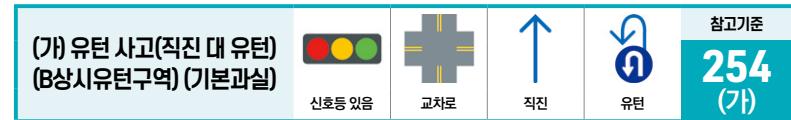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 심의외 차량이 3차로 중간에서 정지하였음에도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정지하였음

결정 이유

- 후행 청구차량이 급정지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심의외 차량 때문에 정지하였던 점, 다만, 피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정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3은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점과 뒷차량은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9조를 근거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3을 적용하여 과실을 판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정지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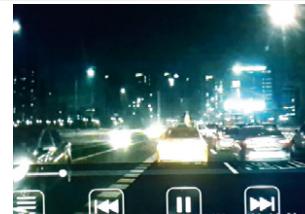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708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정체구간에서 1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가)	<p>(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급유턴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정차 후 직진함이 명확한데도 피청구차량은 급유턴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불가항력 사고임 •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정상유턴 신호에 유턴 중 청구차량이 정차 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유턴을 시도한 점과 청구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의 정체구간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면서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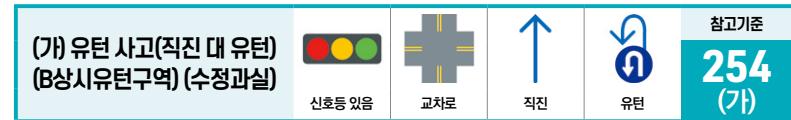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의 정체구간에서 직진 중 반대방향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정체구간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경위와 양 차량의 충돌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가)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지만, 유턴차량이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불법유턴으로 볼 수 있는 점,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신호의 정체 구간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368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서행으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가)	<p>(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유턴차량은 불법유턴을 한 것은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일방과실로는 볼 수 없고, 직진차량으로서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경찰서 조사결과 피청구차량이 가해자로 확정되었고,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유턴구간에서 유턴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도 사고의 중요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고장(내화재) 고장(내화재)
성명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운전면적	2회(2회) 번호: 11 (전화번호)
사고장소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고장(내화재))
발생일자	2018.06.05 22:30
발생장소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사고유형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사고원인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피해나물	고장(내화재) 주민등록번호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기해차량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 유턴 및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상당거리 이전부터 서행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함

결정 이유

- 교차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유턴 신호를 하면서 상당거리 이전부터 서행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던 점,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의 과실도 상당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가)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신뢰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지만, 유턴차량이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였으므로, 불법유턴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에서 유턴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가)를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였고, 청구차량이 상당 거리 이전부터 유턴을 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 없이 직진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970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청구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나)	<p>(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유턴을 거의 완료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를 진입하던 중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호위반 제254(나) 유턴
신호등 유턴 직진	신호등 교차로 유턴
2017.10.29 13:00	2017.10.29 13:00
■ 대차	■ 대차
사고장소	사고장소
사고유형	사고유형
피행人体	피행人体
기타	기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확인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인 점, 피청구차량의 신호변경 과정으로 불만한 입증자료는 없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나)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직진 대 유턴) (B신호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 (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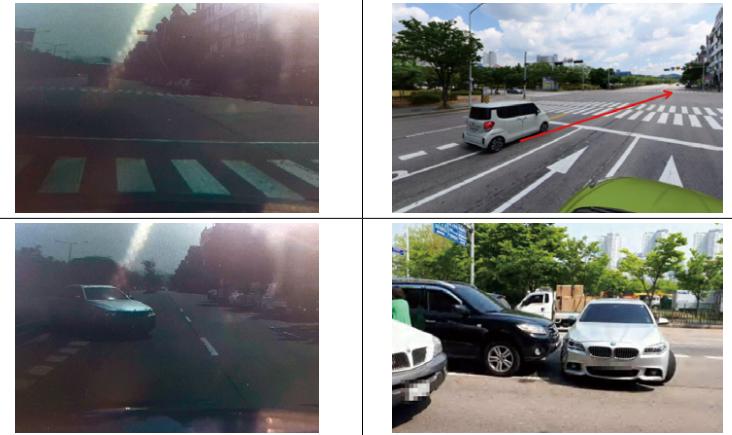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37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나)	<p>(나)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변경되었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급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정상 직진과 피청구차량의 급유턴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이후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 적색으로 변경)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직진 방향)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사진)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적색신호로 바뀐 점,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의 (나)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상황이므로 필연적으로 직진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신의 진로로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의 (나)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였고,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73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청구차량이 유턴 중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가) B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원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A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B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A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미리 발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30 : 7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 하던 중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고,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5%, 피청구차량의 과실 85%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여 3차로에 정상 진입 후 3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며 2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금유턴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유턴 중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의 충격 직전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의 충격 직전의 모습)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유턴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한 점,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불상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대우회전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가)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회전차량으로서도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 회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07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의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4-1(가)	<p>(가) B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A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B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A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미리 발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을 완료한 이후 직진하려던 중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하여 직진하는 상태였고,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 직진신호 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주유소에서 주도로에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은 유턴지점에서 유턴(통상 유턴표지판에 지시내용이 없을 경우, 주행신호시 유턴)을 하던 중이며, 청구인차량은 주유소 출입구에서 우회전과 동시에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p>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p>	<p>사고 현장 약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 중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나타난 양 차량의 진행 경위 • 동영상(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우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주유소에서 3차로로 우회전을 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가)는 유턴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회전 차량으로서도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 회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가)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였고, 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유소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973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나)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인 A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B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8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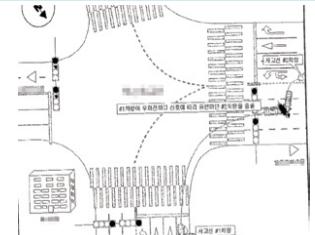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첨그이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우회전 후 일정거리를 주행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점,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피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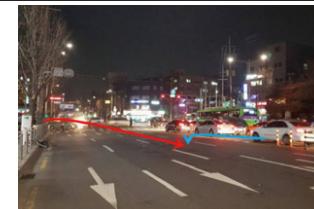


- 피칭구차량이 유던신호에 유던 중 대우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우측 차로(4차로)로 우회전을 해야 하나, 2차로까지 대우회전하여, 유던신호에 따라 유던 중인 피칭구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부고정성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신고서		교통사고 신고서	
별명	민경희	국적	한국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운전여부	영업 차량	승객수	(승객수) 1명
사고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23	운행시간	2018.11.20 19:35
운행경로	부산 ~ 천안	운행거리	400km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입차 <input type="checkbox"/> 차운차 <input type="checkbox"/> 거리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운전자의 주의기운 부족		
피해자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반인 <input type="checkbox"/> 타인 <input type="checkbox"/> その他		
상황설명	본인은 운전 중 차운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구처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처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처량이 피해처량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그다음 칸에 차량이 진짜로 놓여있지 않은 경우)

주요 쟁점

- 유턴시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우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던 점, 우회전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나)는 전방의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유턴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유턴 사고(우회전 대 유턴) (B신호유턴) (수정과실)					참고기준 254-1 (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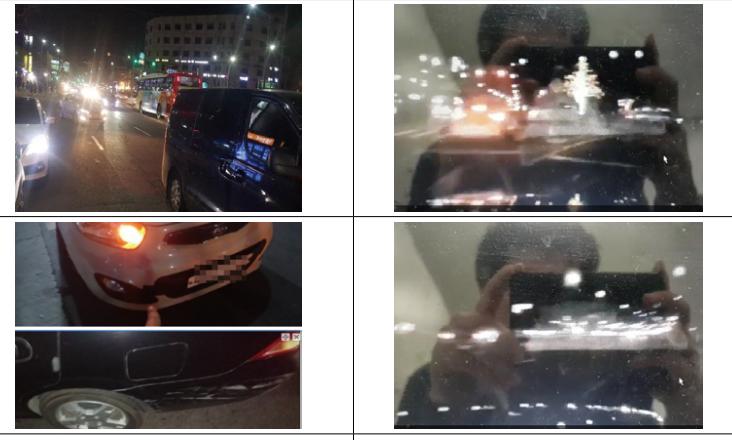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758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크게 유턴하던 중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1(나)	<p>(나)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인 A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B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유턴구간에서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무리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진행 중 청구차량이 크게 유턴하면서 3차로까지 침범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를 진행한 사실과 청구차량이 크게 유턴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유턴신호가 있는 유턴구간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뒷부분)
- 동영상(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 중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우측 차로까지 크게 유턴을 하였던 점, 동영상에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유턴하는 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 기타 접촉 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1의 (나)는 전방의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유턴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1의 (나)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였고, 청구차량이 다소 크게 유턴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06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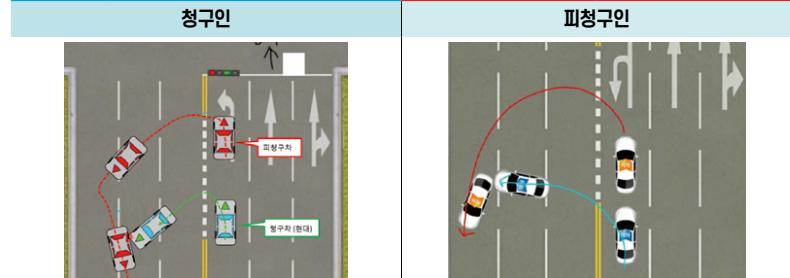
- 선행 피청구자량이 유턴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뒤에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던 후행 청구자량과 충돌한 사고임



(가)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온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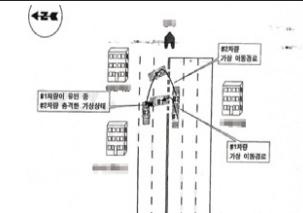
기본비율 A:B=0:10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유던구간에서 선행 유던차량의 뒤를 따라 서행으로 유던 중 선행 유던하던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복귀하다가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동시에 유던 중 사고로, 선행행 관계를 고려하면 후행 청구 차량의 과실 70%, 선행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선행 유던 중 후행 유던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이미 선행하여 유던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접촉부위는 뒷범퍼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 중인 모습)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정차 위치를 보면 청구차량의 금융권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약도에 양 차량의 유턴 중 사고로 확인됨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유턴 중 후행하는 차량이 급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선행 피첨구차량의 유턴 중 진로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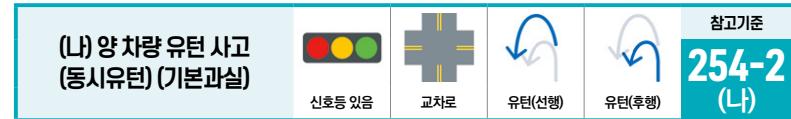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금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선행하여 유턴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피첨구차량이 유턴하면서 3차로까지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후행 청구차량이 짧게 급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9(기)는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으로서는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또는 후행상태에서 가로질러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첨구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급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29(기)를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였고, 선행 피첨구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첨구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첨구차량 1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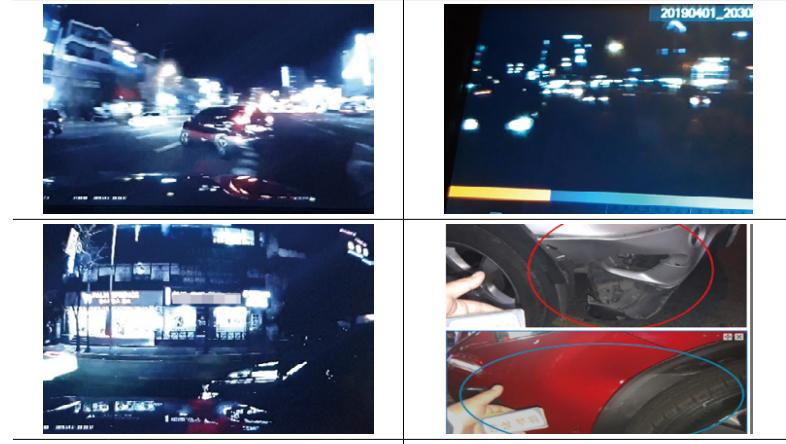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3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선행 피청구차량과 후행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2(나)	<p>(나)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후행하면서 유턴 중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유턴 중 정차된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 유턴 중 정차한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유턴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뒤를 따라 유턴하지 않고 추월하듯 유턴을 하여 먼저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후행 청구차량이 추월하듯 유턴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의 유턴과 동시에 유턴을 시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 중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후방에서 동시에 유턴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 차량 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선/후행 차량 간의 동시유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후행하면서 동시에 유턴을 시도한 청구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만, 피청구차량도 뒤에서 유턴을 하다 정지하고 있던 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과실 인정할 수 있는 점, 충돌 당시 청구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던 점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의 (나)는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54-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374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청구차량이 좌측의 가차로에서 서행으로 유턴 중 우측 차로에서 동시에 유턴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4-2(나)	 기본비율 A : B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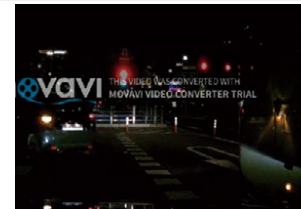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대기 후 출발하려다 2차로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가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피청구차량은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정상 유턴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한 청구차량의 과실은 50%가 타당함

-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대기 후 출발하려다 2차로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가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을, 피청구차량은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유턴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정상 유턴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한 청구차량의 과실은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의 동시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유턴한 차로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팽점

- 양 차량이 동시 유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좌/우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유턴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 청구차량은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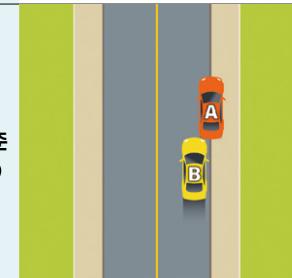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유턴 중 발생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로 보이는 곳에서 대기하였던 점, 청구차량 이전에 가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었고, 청구차량은 상당시간 동안 정차하고 있어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정차 및 유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4-2의 (나)의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선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후행 유턴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가 아닌 좌우측 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양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도표 254-2의 (나)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좌측에서 유턴을 하면서 정지한 청구차량은 정식 유턴차로가 아닌 가차로에서 유턴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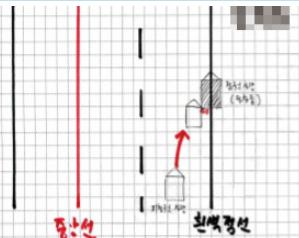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472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55	 <p>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으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 중 출음운전을 하였던 피청구차량에게 추돌당한 사고로, •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로 형식 주정차가 가능한 넓은 대로이므로, 후미추돌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도 2차로의 커브길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이기는 하나 커브구간에서 2차로의 대부분 차지하여 주정차한 청구차량의 과실 1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 차량인 청구차량의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 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갓길에 정차된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흰색 실선구간에 정차하였고, 사고 시간은 주간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시야에 제한이 없었던 상태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흰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한 점, 피청구차량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주간임에도 감속 내지 제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청구차량을 추돌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5는 선행 차량이 주행 중 발생한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흰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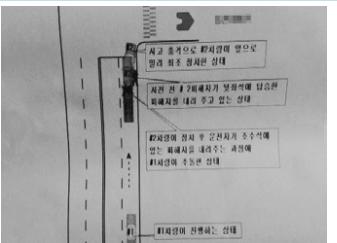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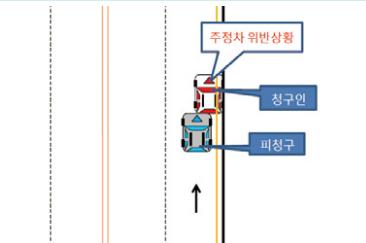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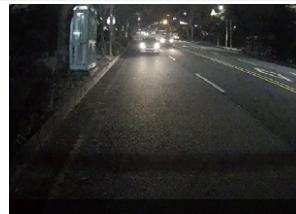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66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역에서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5	 <p>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사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 편도 2차선 도로의 황색점선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뒷좌석에 있는 자녀를 내려주던 중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불법주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정차 중이었고, 약간에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발사고 진수번호: 201803211950
고발일자: 2018.03.21 19:50
고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000)
사고유형: ■ 주·정차 ■ 차량상충 ■ 차대차 ■ 기타
사고현장: 안전분석부록부본
피해자명: 이름: 김모성 성별: 남 나이: 35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456789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000
사고개요: 2018.03.21 19: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000에서 김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황색실선을 침범해 정차하는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모성이 운전하는 차량은 황색실선을 침범해 정차하는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영상(정차한 청구의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황색실선 구간에 청구차량이 정차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정차한 청구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황색실선 구간에 정차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추돌사고로,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주정차 중이었던 점과 약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5는 선행차량이 주행 중 발생한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55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였고, 청구차량이 황색실선 구간에서 정차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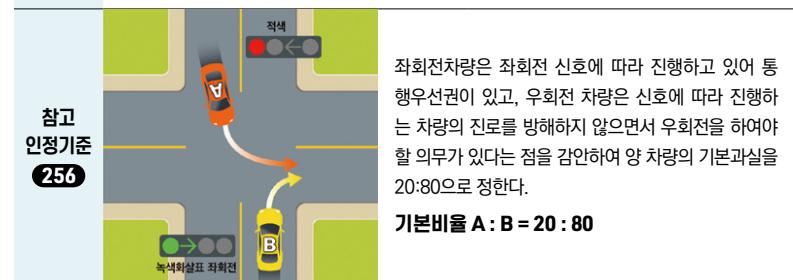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185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까지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파손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이고,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여 2차로로 선진입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 후 피청구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좌회전 후 진로변경, 속도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우회전을 하고 있는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대좌회전,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의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던 점, 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6는 좌회전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이고, 양 차량 모두 대회전을 하였으므로, 도표 256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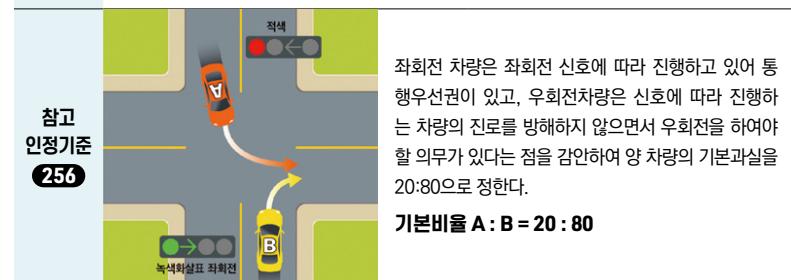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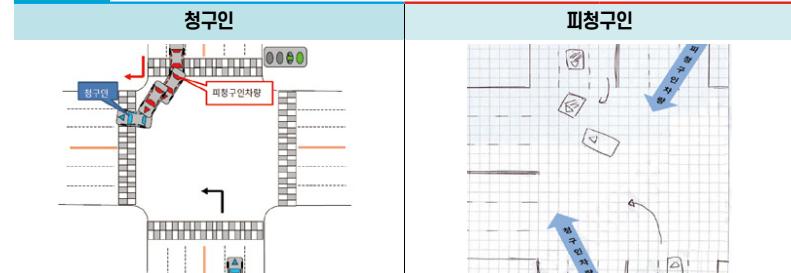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2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끼어들어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정해진 차로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2차로로 대우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접촉 부위)

주요 쟁점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2차로로 대우회전하여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6는 좌회전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우회전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도표 25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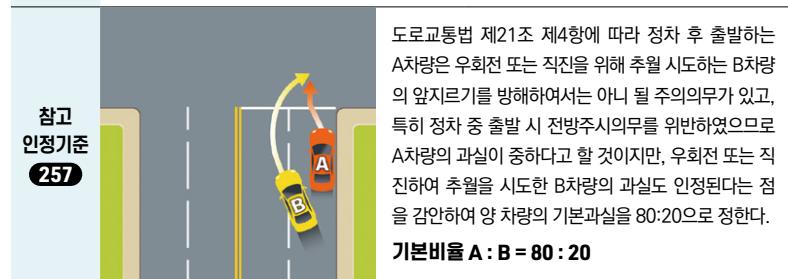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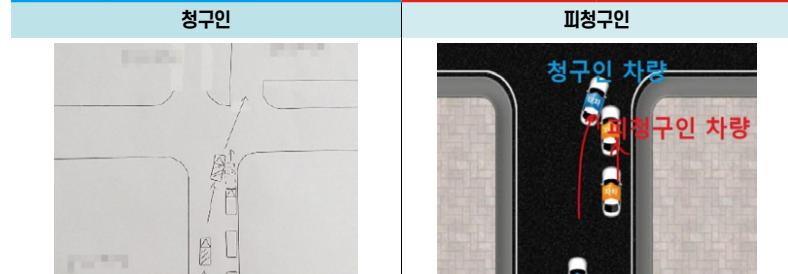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80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도로의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이면도로를 주행 중 도로의 우측에 불법주차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불법 주차 후 갑자기 출발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도로의 우측에서 정차 해제 후 주행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서행하며 도로의 주변상황을 잘 살펴 운행했어야 하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직진(우회전)하기 위해 추월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피청구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을 충격 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청구차량을 추월 후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7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후 출발 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또는 우회전)위해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우회전을 위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25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52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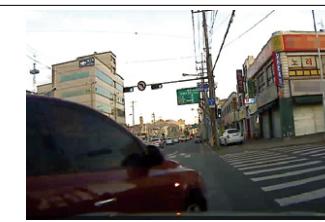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 3차로의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7	<p>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p> <p>• 교차로 부근의 우측에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우회전 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급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우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70% 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청구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모습이 확인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직진(우회전)하기 위해 추월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에 대한 청구차량의 예측 가능성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동영상에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에 승객이 탑승하는 모습과 정차 후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승객이 피청구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곧 출발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7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후 출발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또는 우회전)위해 추월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다가 좌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7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나)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B녹색 직진, 좌회전신호(선행) (기본과실)					참고기준 258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003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58(나)	<p>(나) A차량이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B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노면의 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대좌회전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대좌회전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선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여 2차로의 청구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후행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직진/좌회전 신호에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선행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점,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대좌회전이 아닌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58의 (나)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전방의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선행하여 좌회전 중 좌회전 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8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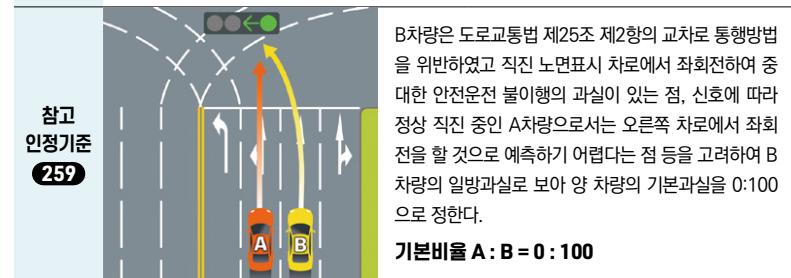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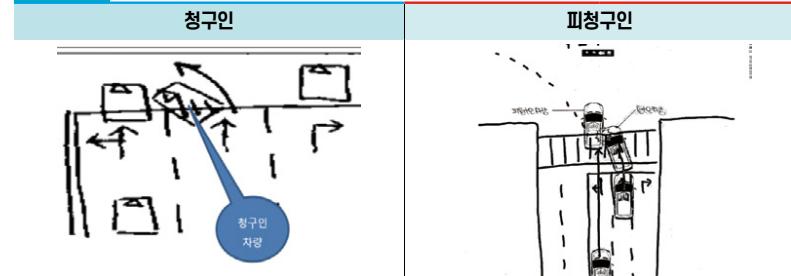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9-00376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서로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되어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후행상태에서 서행 불이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급진로변경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교차로 내 급진로변경과 지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청구차량의 선행 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직진 노면표시 구간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한 선행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과실이 중대하나, 후행 피청구차량도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청구차량의 교통흐름을 잘 살펴 최소한의 위험회피, 안전조치 주의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예전 또는 회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59는 직진이 표시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노면표시 위반 등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는 오른쪽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59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30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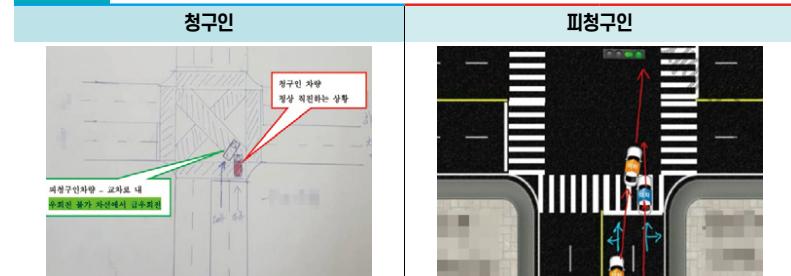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의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종 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 기본과실을 100:0으로 본다.

기본비율 A : B = 100 : 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방향지시등도 겠지 않은 피청구차량이 급차로변경을 시도하며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할 때 청구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 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서행하여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 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진 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노면의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직진/좌회전의 노면표시 위반하여 우회전하였고, 진로변경 신호 없이 급우회전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함
- 도표 260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종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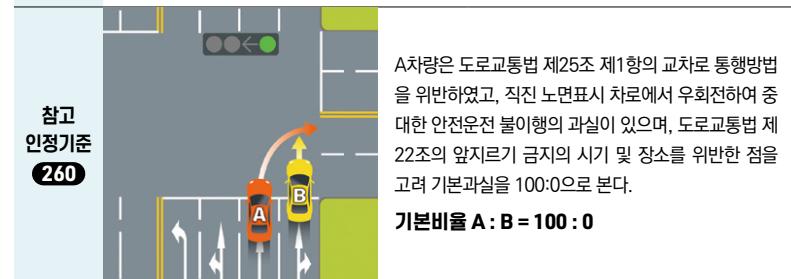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44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 선행 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던 중 후행 피청구 차량이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을 하던 중 피청 구차량이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된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 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정차 후 출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 실 사고임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신호 변경 후 출발하다가 피청구차량과 접촉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1차로는 직진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우회전차로임)

주요 팽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선행차량과 직진차로에서 노면의 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신호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신호 변경 후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던 후행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신호 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음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가 변경되어 2차로에서 출발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제출된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고경위를 볼 때, 피청구차량은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로변경 형태의 우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신호 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발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0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하였으므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추월형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신호변경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출발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8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p>•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61	 <p>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률을 0 : 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 가능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 지시위반을 하여 발생된 사고임은 인정하나, 피청구차량도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가능차로인 2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은 우회전을 완료한 시점에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2차로 : 좌회전, 직진, 우회전차로, 3차로 : 우회전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 조수석 측면)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선행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선행한 점,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1은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은 중대한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우회전 가능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선행 피청구차량을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차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84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1	<p>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률 0 : 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중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청구차량으로서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이 우측 도로를 통제하여 다시 직진하던 중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가 통제 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3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선행차량이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행 직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사고 발생 이전에 청구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직진/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 중 우회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속상부위와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1은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은 중대한 안전운전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우회전 가능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1차로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278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2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B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중인 B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이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로 진입 전 감속하여 서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빠른 속도로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회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하던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피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는 점, 피청구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동영상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2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중인 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회전교차로를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68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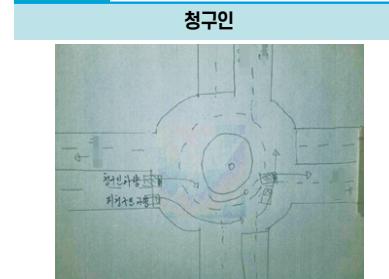
사고내용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전 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로 진출하면서, 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피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계속 회전하여 청구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회전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회전 중 급차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를 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를 회전하다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양 차량의 속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3은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은 서로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70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3 	<p>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상 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로터리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격되었고,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내 급차로변경 사고인 바,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 동영상(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진로변경하는 청구 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인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급진로변경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따라 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급격히 하였던 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3은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은 서로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춰서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6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59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 중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60 : 40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우측 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선진입 중 왼쪽 차로에서 후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청구인



- 피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2차로의 청구차량이 피청구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한 사고로,
- 본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 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1차로에서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약간 선행인 점,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던 점, 접촉부위에 비추어 피청구차량의 접촉으로 청구차량이 약간 회전형태로 정차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도표 2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6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74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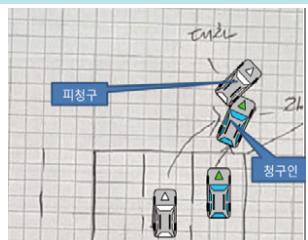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60:4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60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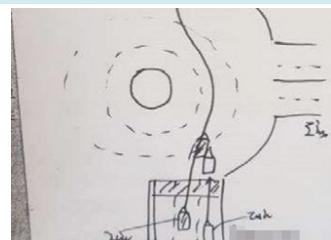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동시에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후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선행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 후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선행하여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을 후미축돌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청구인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 진입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 사고 후 정차 위치와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2차로(왼쪽 차로)에서 진입하였으나 사고 후 정차 위치를 보면, 선행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6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왼쪽 차로에서 진입하였던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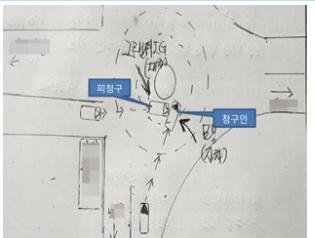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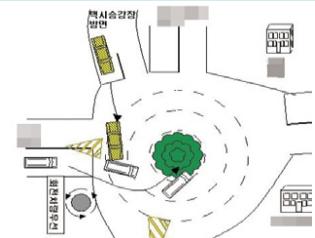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4658 |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임

 	<p>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중인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상 보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뒤늦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회전차량우선'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선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회전교차로의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뒷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1차로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서행하던 피청구차량의 회전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4는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차로에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므로, 오른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왼쪽 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다른 방향의 도로에서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나,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도표 264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였던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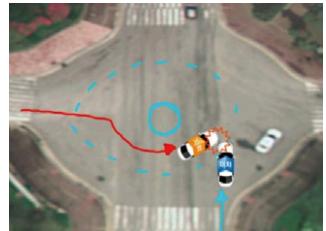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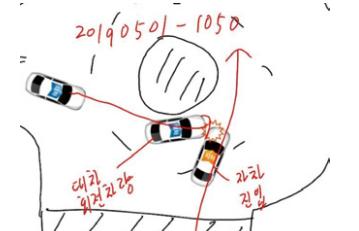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회전교차로	회전1차로 회전	회전1차로로 대진입	참고기준 26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39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회전 중 회전교차로의 1차로까지 대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65	 <p>회전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서행 및 양보 의무가 있으며, 급진로변경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기준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1차로를 진입 중 1차로에서 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서서히 진입하여 청구차량이 충분히 인식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를 회전 중 1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동영상(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의 1차로로 대진입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원쪽의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청구차량이 명백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1차로까지 직진한 점, 청구차량의 운전자도 위와 같은 피청구차량의 운행 행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5는 회전교차로에서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서행 및 양보 의무가 있으며, 사고의 형태가 급진로변경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90%, 회전 중인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1차로까지 대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6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차 회전교차로 사고 - 회전차로 2차로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776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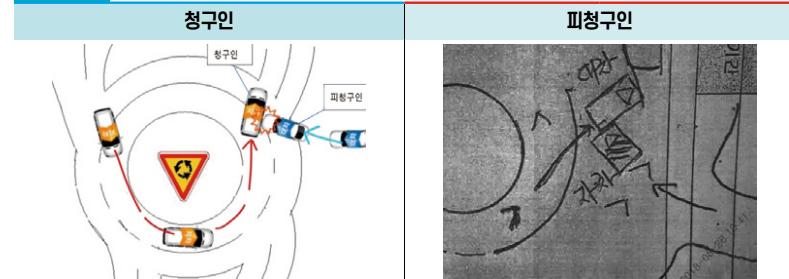
사고내용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1차로의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여 진로변경 해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 회전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하면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급진입하여 피청구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 중 회전교차로에 정상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2차로 형태의 회전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오른쪽 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음

결정 이유

-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우측 도로로 진출하려고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66은 회전교차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진입차량의 경우 양보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 회전차량도 2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서 진로변경 중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6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축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217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2	<p>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위반 A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녹색신호에 정상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 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모습 심의와 차량 동영상(사고 후 정지해 있는 양 차량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교차로)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소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2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위반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를 진행하다가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0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653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접촉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적색점멸신호에, 피청구차량은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 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청구차량이 단지 내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사진(사고 장소는 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전면부 손상)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와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큰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피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에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3은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도표 203을 준용 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륜차가 상대적으로 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점멸신호에, 피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점멸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나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도표 303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436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을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4	<p>A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다가 오른쪽의 가로등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 왼쪽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청구차량이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한 비접촉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통사고 접수번호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족회원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운전면허	종별 : 자동 (다른) 번호 : 3 (소유자 :)
사고발생	처음 : 송정로 2018.06.16 09:00
발생장소	
사고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라디사랑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현장	신호 또는 교차로 부상
피해차량	모델 : 차량 0, 부상 1, 경상 : 10,000 원 상당
사고개요	#1 차량운행방법: 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하는 기상의 모습 #2 차량운행방법: 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하는 기상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발견하고 피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접촉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청구차량이 피양하다가 가로등을 접촉한 비접촉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4는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의 충격을 피하다가 청구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537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5 : 35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A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60 : 4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쪽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교차로 진입 속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하던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진행한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4는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중 적색신호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04를 적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야간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22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5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304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3차로를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5%, 피청구차량의 과실 25%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5%, 피청구차량의 과실 25%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생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녹음내용상 경찰서에서는 피청구차량이 예측출발을 하였고, 청구차량을 기해차량으로 보고 있는 점, 피청구차량의 진입정도, 사고 당시는 야간인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5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 뿐만 아니라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0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286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과속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피청구 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5	<p>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는 시점에 서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양 차량 과실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제한속도를 60.7km/h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속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속도위반 이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양 차량의 신호 위반이 확인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교사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통과할 무렵 피청구차량(이륜차) 또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인 점, 청구차량이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5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04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 뿐만 아니라 피청구차량(이륜차)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05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8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6(가)	<p>(가)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 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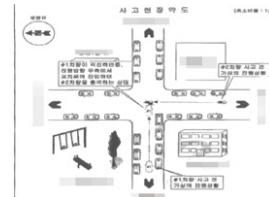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은 교차로에 후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5%, 피청구차량의 과실 45%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상자	부상자
운전자	운전자
승객	승객
화물	화물
기타	기타
사고장소	사고장소
사고유형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원인
사고내용	사고내용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임)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양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형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통상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양 차량 모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06의 (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도표 306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3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5 : 5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p>(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도 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A이륜차가 선진입하였다면 양측의 기본과실은 20:80으로 정하고, B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에는 양측의 기본과실을 45:55로 정하였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에서 서행하지 않고, 후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황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의 주된 원인으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사석 뒷부분이 손상됨)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상호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차량의 속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접촉 부위에 비추어 청구차량이 선진입 상태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로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6의 (다)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상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진입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 오른쪽 도로에서 이륜차가 후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5%,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4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6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5% 피청구차량 4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원쪽 도로에서 직진 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 (동일 폭)(동시진입)(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	참고기준 307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82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7(가)	<p>(가)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 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후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후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접촉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입증 자료

<p>•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p>	<p>•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 차량(이륜차)의 앞부분 손상)</p>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이륜차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원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원쪽 도로에서 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7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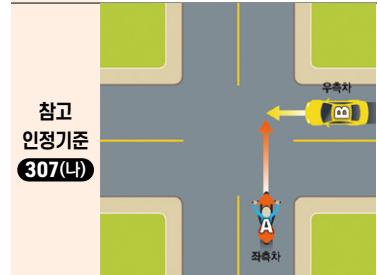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2570

A(피청구) : B(청구) = 35 : 65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을 하면서,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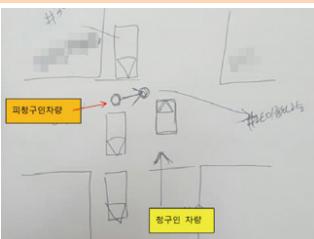


(나)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등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35 : 65

주장 내용

첨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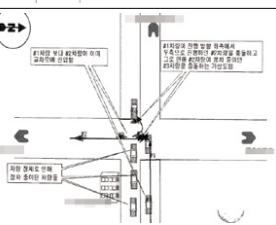
- 청구차량이 이면도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직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급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왼쪽에서 직진하다 접촉한 사고로,
-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 모두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5%, 피청구차량의 과실 35%가 타당함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교차로 내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악도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한 것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 사거리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나)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5%,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상황이므로, 도표 307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5% ● 피청구차량 3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원쪽 도로에서 직진 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 사거리	↑ 직진	↑ 직진	참고기준 307 (다)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04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 원쪽 도로에서 후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7(다)	<p>(다)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등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에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뒷측면을 접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오른쪽,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원쪽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던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후진입 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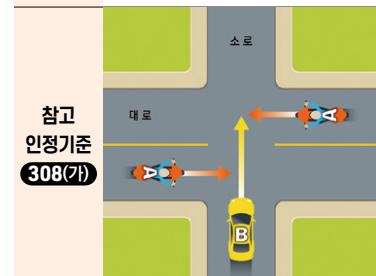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청구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7의 (다)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보다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원쪽 도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이므로, 도표 307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동시진입)(기본과실)					참고기준 308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99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가)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진입시 서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대로에서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청구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맞은 편 농로로 진입하려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소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대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왼쪽 축면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충격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8의 (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이륜차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대로에서 진입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상황이므로, 도표 308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308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76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 대로에서 후진입하여 교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8(다)	<p>(다)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소로의 이면도로를 통과하여 맞은편 주택가로 진입하였는데,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을,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였고,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소로) 동영상(양 차량이 충각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로)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각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후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각한 사고로, 동영상을 보면 청구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각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8의 (다)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 선진입한 경우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선진입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대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을 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한 상황이므로, 도표 308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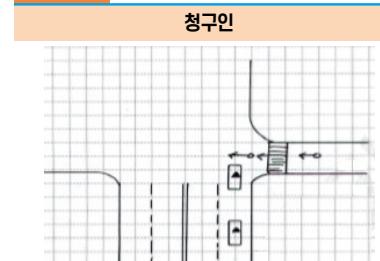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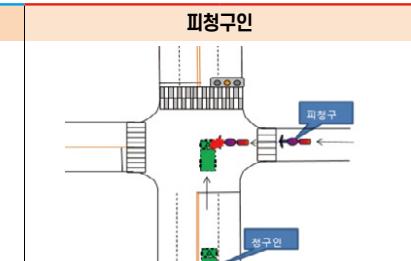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소로 직진 대대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직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0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494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가)	 <p>(가) B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 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을 50:50과 75:25로 각각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소로에서 진입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서행으로 진행하던 청구차량으로서는 갑자기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고,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2)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측면 손상)

주요 생점

-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상호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오른쪽이지만,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인 점, 제출된 동영상만으로는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대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를 동시에 진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인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였고,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09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소로 직진 대 대로 직진 사고(A선진입)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있음	사거리	소로 직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09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462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구분이 있는 황색점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나)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309의 (가) 동시진입 사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후진입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명백한 선진입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1)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입 중 소로에서 진입하는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오른쪽 축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차이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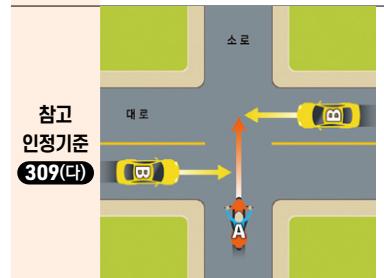
-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나)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행한 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한 점, 소로에서 진행하는 이륜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이륜차는 차량이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후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소로에서 선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9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소로 직진 대 대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직진	대로 직진	참고기준 309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76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5 : 2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09(다)

(다) B차량이 대로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
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동시 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
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을 50:50과 75:25로
각각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75 : 25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청 구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 의 일방과실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사거리에서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 중 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서행불이행한 점, 피청구차량이 소 로에서 선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
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피
청구차량(이륜차)이 진행한 도로가 소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선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를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
던 중 오른쪽 소로에서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황색점멸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를 진행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대로에서 진행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감속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09의 (다)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를 정
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던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
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5%, 소로에서 후진입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점멸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 소로에서 후진
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09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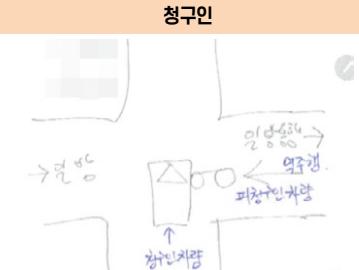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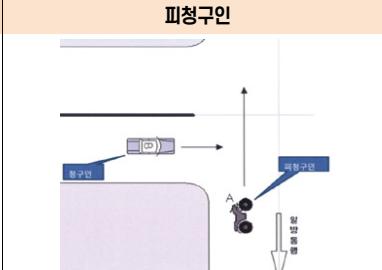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64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3	 <p>A이륜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도표 208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주행 중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시점에 피청구차량이 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의 골목길 사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 중 정상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전형적인 도표 313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한쪽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하였던 점,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3은 이륜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도표 208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1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한쪽 차량 신호위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88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314	<p>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 받아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위반하여 직진, 청구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이륜차임을 감안하여 청구차량 과실 80%, 피청구차량 과실 20% 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 진행 도로)
- 동영상(신호위반 직진 중 전도된 피청구차량(이륜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뒤쪽 축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신호위반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이 모두 신호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음(화면의 녹색신호는 이륜차 직진신호가 아님)
- 청구차량은 정상신호 좌회전 또는 좌회전 완료 무렵 신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 직진하다가 제동하면서 넘어져 청구차량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차량 넘어지는 시점 교차로 신호등 녹색으로 바뀐 점은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청구차량 파손부위로 보아 좌회전신호에 교차로 진입후 교차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사고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14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호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차량 0%, 신호위반 직진 이륜차량 100%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09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8	<p>기본비율 A : B = 10 : 90</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 8. 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A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직진하였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급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도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8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비보호 좌회전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점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1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2228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319	<p>A이륜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갑자기 급진입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비보호 좌회전이 확인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무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무과실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9는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비보호 좌회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삼거리 교차로인 사고 장소만 상이할 뿐 나머지 사실관계는 도표 319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내용과 동일하여 도표 319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51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19	<p>A이륜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정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정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로변경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피청구차량의 기작회전 등을 고려 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의 시야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청구차량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음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 차량이 정체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직진 중이었고, 정체차로의 차량으로 인하여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의 발견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19는 이륜차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비보호 좌회전차량인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고, 삼거리 교차로인 사실을 제외하면 도표 319과 동일한 사고 내용이므로, 도표 319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685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0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A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좌회전 중인 B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유사도표 211을 기초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30 : 7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 변경된 점, 피청구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동하지 않았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황색신호 변경되어 제동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을 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좌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앞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진입 후 황(적)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속속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점,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감속 또는 제동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0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황(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이륜차가 직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좌회전차량에 비해 과실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으며,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후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2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8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A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인 점에 비추어 좌회전 중인 B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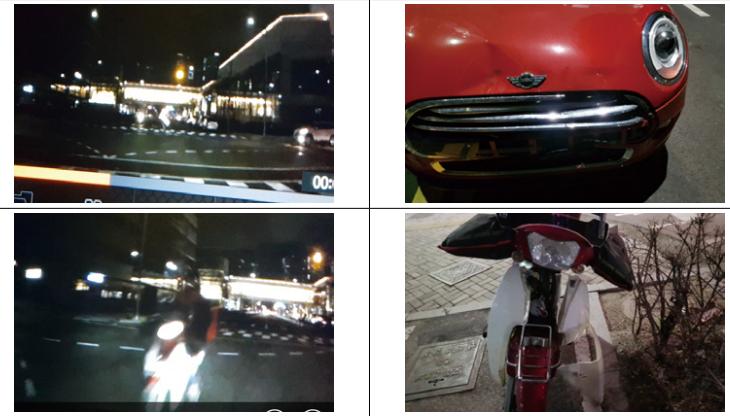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 청구차량이 직진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좌회전,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 양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면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 도표 318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황색신호에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황색신호에 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 후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직진한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점, 피청구차량은 이륜차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2는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이륜차가 비록 황(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더라도 직진 중이었으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에 비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2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 선진입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4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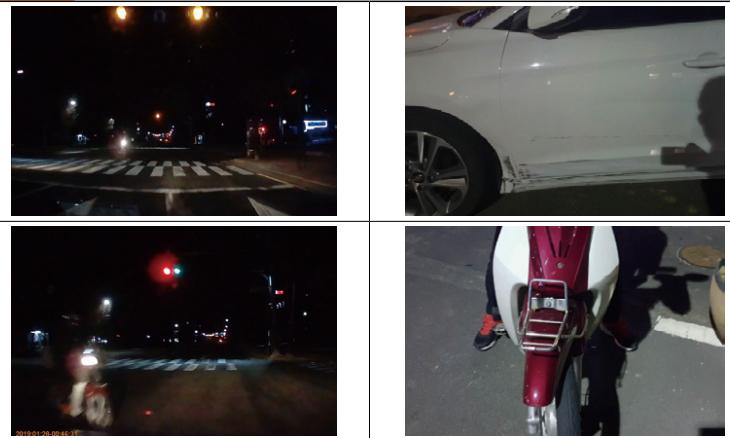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50 : 5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던 상황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피청구차량의 후진입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대기 후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을 하였고,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양 차량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량인 점, 제출된 자료 및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경위, 양 차량 주행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3은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직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으로 직진차량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 요구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양 차량 신호위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3480

A(피청구) : B(청구) = 55 : 45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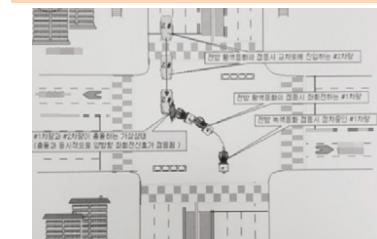


A이루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이루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50 : 50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피첨구자랑(이준자)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으나, 청구자랑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피첨구자랑의 교차로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자랑의 과실 90%, 피첨구자랑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자량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자량(이륜차)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자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신호대기 위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좌회전 신호에 충격,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충격),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인 점,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차량인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3은 황(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직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므로 직진차량에 비하여 높은 주의의무 요구되지만,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된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5% ● 피청구차량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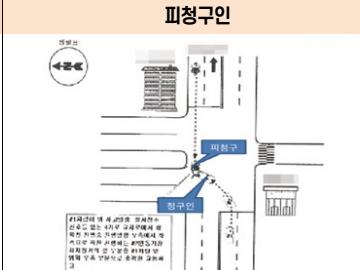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07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여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차량의 기좌회전 인정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회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인 모습) 동영상(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여,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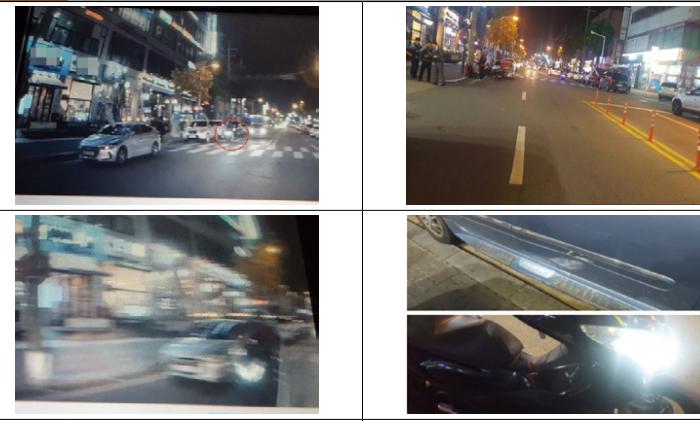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42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급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여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상태에서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서행 불이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가 직진 중 유턴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청구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급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소로로 급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제출된 동영상을 볼 때, 청구차량은 직진 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근접거리에서 급좌회전을 하였던 점,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반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739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한 이후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맞은편 도로의 1,2차로 사이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2차로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대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유턴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쪽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1차로와 2차로의 좁은 공간으로 선행차량들을 추월하면서 직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이륜차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4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2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례 개요

2018-07264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차량들 사이로 좌회전 중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여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B = 60:40

주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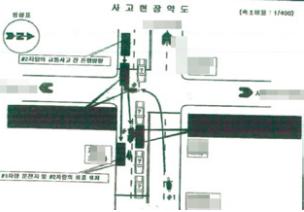


- 청구처량[이륜차]이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처량이 2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처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청구처량[이륜차]이 밀리면서 3차량을 대충 격았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처량의 과실 60%, 피청구처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 피청구처량이 2차로에서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청구처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처량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처량으로서는 피양불가한 사고임
 - 따라서 청구처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시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신청자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악도에 정체차량들 사 이로 차단저하는 청구차량이 다른차의 모습이 확인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要点: 청구자측이 이륜차가 전체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사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교사원의 사고현장 애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이륜차]은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급좌회전하여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인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점, 충격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5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도표 214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좌회전 이륜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 차량인 피청구차량의 과실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인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5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급좌회전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31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6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 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원쪽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이후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객사고 접수번호
설명	제2017-043123
주 소	(전화번호 : 010-XXXX-XXXX)
사고처장	차종 : 아반떼 번호 : 20-XXXX-XXXX
발생일자	2017.07.17 18: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차 대사ชน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현장	신호 조도 교차로 위반
고객내용	접수일자 : 2017-07-17 18:00 접수인 : 010-XXXX-XXXX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77 일산동경찰서 일산동경찰서에서 신고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차량 A(아반떼)는 신호에 차대차로 진입하였고 차량 B(이륜차)는 차량 A(아반떼)와 같은 신호에 차대차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 A(아반떼)는 차량 B(이륜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개요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
- 동영상(원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 차량(이륜차)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동영상(사고 발생 전 원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청 구 차량(이륜차)의 모습)

주요 장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임에도 신호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감행하여 원쪽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의 대기상태는 본 사고 발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차량은 신호변경이 되자 빠르게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6은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이륜차 가 서로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녹색신호에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2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6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7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 없이 좌회전 중 녹색신호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에 의하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7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서로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신호위반을 한 좌회전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녹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한쪽 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신호가 없는 상태이나,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였고,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27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77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9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청구차량이 소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더라도, 청구차량도 소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동사고 경주면로
설명: 062773-00000-00000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치평동 운전면허: 종별: 제2종 보통 번호: 111-11111 사고차량: 차종: 2인승 모터사이클 번호: 111-11111 발생일자: 2019. 06. 05 20:10 발생장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유형: 신호 위반, 차량 충돌 사고원인: 신호 위반, 차량 충돌 피해내용: 차량 손상, 부상자 1명 사고개요: 혼인희대 사고	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신호위반 이기재됨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면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9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2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05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29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직진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은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소로에서 좌회전한 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좌회전한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차량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함

결정 이유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신호기가 없는 도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때 좌우 주시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29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329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신호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차량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920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중 원쪽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1(가)	<p>(가) A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이지만 양측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한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원쪽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쟁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인 차량과 적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원쪽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충돌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충돌사고로,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 하였던 점, 동영상에 원쪽의 횡단보도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1의 (가)는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이지만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진입한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으며,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한 경우이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도표 331의(가)와 동일하여, 도표 331의 (가)를 준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은 원쪽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621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2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B차량이 우측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의 사고에 관한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좌회전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이면도로에서 서행 직진 중 오른쪽 공장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일시정지 않고, 좌회전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오른쪽 도로를 진행하는 모습)
-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은 서행하여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2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279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5 : 65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 도로에서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 차량 이동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p>좌회전 차량 교차로 차량 이동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음)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앞측면,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를 진입하였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하며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을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직진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2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인 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0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원쪽 도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2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5% ● 피청구차량 35%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217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중앙선이 있는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p> <p>• 소로에서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p> <p>• 왼쪽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1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진행하는 #2차량을 충격하여 넘어 지게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된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3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이륜차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좌회전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이륜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한 차량인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왼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5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고, 청구차량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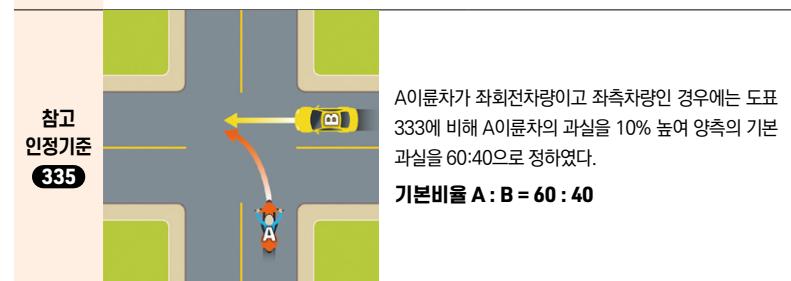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좌회전(좌측도로 에서 진입)	직진(우측도로 에서 진입)	참고기준 335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15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피 청구차량(이륜차)이 역주행하다가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은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좌회전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p>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피청구차량이 직진 차량임을 확인할 자료는 없고, 또한 직진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삼거리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5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므로, 도표 333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3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265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서행하며 좌회전 중 원쪽 대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6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기좌회전,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 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5%, 피청구차량의 과실 35%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336의 기본과실을 적용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목격차량 동영상(사고 후 양 차량이 정차한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과 피청구차량의 과속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중 원쪽 대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며, 피청구차량은 빠른 속도로 직진 하였음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상당부분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이나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6은 대로가 구분되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소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90%, 대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3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좌회전 대대로 직진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33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1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7	<p>A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정상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청구차량은 무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편도 2차로의 대로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지점과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7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대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3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230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37	<p>A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한 경우에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A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서행으로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소홀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모습이 확인됨)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 차량의 앞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로 보이고, 피청구차량이 왼쪽의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37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으며,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표 222에 비해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대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37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됨에도, 일시정지 없이 곧바로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81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 중 소로에서 후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확인 후 일시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여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청구차량의 과실 90%)</p>	<p>• 변형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표지가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소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p>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



- 동영상(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인 모습이 확인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행 방향에 '정지' 표지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직진을 주장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동영상에 의하면 좌회전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은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6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직진 중인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좌회전차량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표 225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4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58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48(다)	<p>(다) 우회전차량인 A이륜차가 후진입한 경우에 도표 229에 비해 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오른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교차로를 통과한 청구차량의 측면을 피청구차량이 충격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55%, 피청구차량의 과실 45%가 타당함

입증 자료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을 하면서 앞바퀴 부분으로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8의 (다)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과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29의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어, 선진입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진입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우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48의 (다)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93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49(가)	<p>(가) B차량이 우측 우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29를 준용 하되, 이륜자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동시진입의 경우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를 서행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이 대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회전방법 위반, 가상의 중앙선 침범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수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크게 우회전하면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인식기능하여 피양기능성이 있는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49의 (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29를 준용하되, 이륜자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륜차 과실을 10% 낮추어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49의 (가)를 기초로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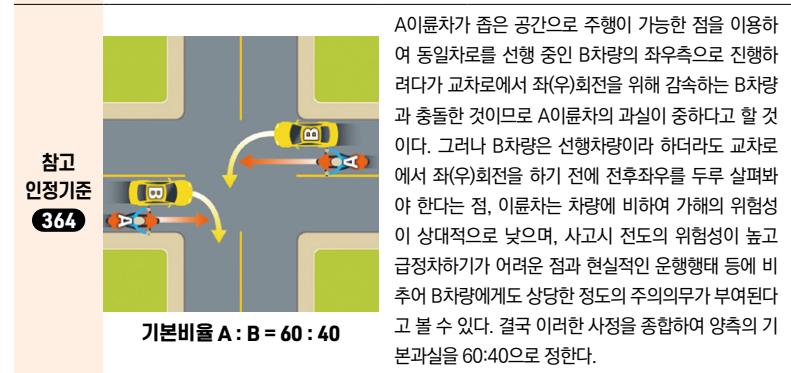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574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우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동일차로의 왼쪽에서 우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측면 손상)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이나 우회전하기 전 전후좌우를 두루 살필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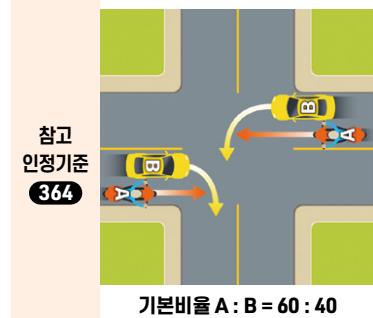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8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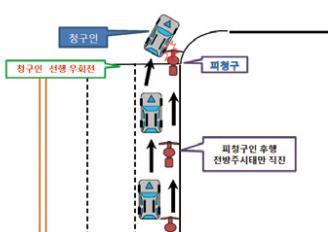
-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B)이 교차로 부근에서 급우회전 중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A)과 충돌한 사고임



A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60:4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첨구인



-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상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진작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를 직진 중 선행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첨구인



- 피첨구차량(이륜차)이 3차로를 진작 중 선행 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피첨구차량이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명상(청구처량이 금우회전 중 후행 직진하는 피청구처량(이륜차)과 충격하는 모습)
 - 청구처량의 파손 사진(조수석 앞도어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처량(이륜차)이 피해처량으로 판단됨
 - 피청구처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과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급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의 청구차량이 선행하다가 우회전 중 오른쪽에서 후행 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금우회전을 하여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동일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급우회전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동일차로의 차량들 우측으로 계속 초월 진행하였던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자로 판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사고 직전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급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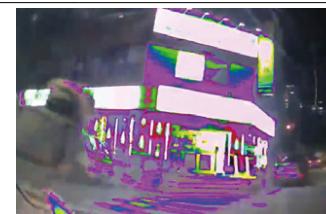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7-0637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4 <p>기본비율 A : B = 60 : 40</p>	<p>AI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AI륜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차량은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지하기가 어려운 점과 현실적인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B차량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후행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측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동일차로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미리 원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 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과 원쪽에서 후행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원쪽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64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우)회전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선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선행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후행하여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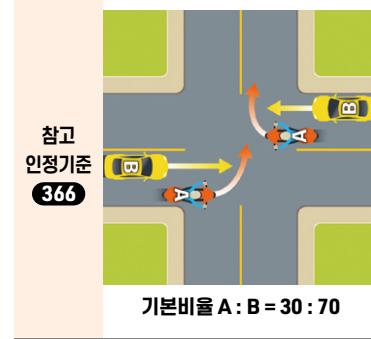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3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원쪽에서 추월하여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은 동일차로를 진행중인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B차량은 동일차로를 선행 중인 A이륜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에서 차로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진행중인 A이륜차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중하고 할 것이지만, A이륜차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륜차의 경우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서 진행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추월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여 진행하였고, 후행 청구차량이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직진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사고 후 양 차량의 정차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후행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의 오른쪽을 통해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다소 급하게 좌회전(또는 유턴)을 시작하여 추월 직진하려던 후행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후행 청구차량의 과실이 다소 중한 점, 피청구차량이 급하게 좌회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6은 동일 차로 내에서 선행 이륜차가 좌(우)회전을 하다가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량은 동일차로 내에서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후행차량은 선행 이륜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륜차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중하고 할 것이지만, 이륜차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이륜차는 좌측 또는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추월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선행 좌(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급좌회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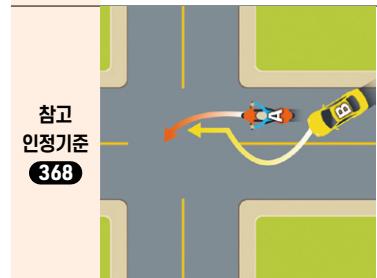
사례 개요

2019-0207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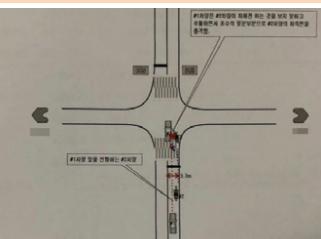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시속을 10:9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B = 10:90

주장 내용

첨구인



-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여 직진 중 갑자기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추월, 피청구차량의 급좌회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추월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피청구인



-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추월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장내 접수번호	경찰서 접수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02-XXXX-XXXX
주 소	[선택사항]		
문자인증	종별 : 회사 보통	번호 : 6456789	[선택사항]
사고처방	처방처 : 경찰서	번지 : 6456789	[소재처] : 경찰서
작성일자 : 2018.07.10 13:37			
발행번호	[선택사항]		
사고현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과 <input type="checkbox"/> 차량상호 <input type="checkbox"/> 고의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명	경찰관으로부터 확인		
내화내용	안녕하세요. 시민 A입니다. 2018년 07월 10일 오후 1시경 경찰서 주변에서 차량과 차량 상호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A는 차량 B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바꾸었지만 차량 B는 차선을 바꾸지 않고 차량 A를 추월하는 행위를 취했습니다.		
사고개요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1)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자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2)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선행 이륜차와 이륜차를 추월하는 후행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원쪽으로 추월하여 직진 중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월을 시도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행차량인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추월하는 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점,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사고현장 사진, 청구차량의 충돌부위 등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8은 동일차로에 내에서 선행 이륜차가 좌회전 중 후행하던 차량이 이륜차를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월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선행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8을 기초로 과실비율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월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39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9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원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한 후 급좌회전을 하여 후행 직진 중 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한 청구차량의 과실 60%, 후행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또는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차로 변경이 불명확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9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후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 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선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후행 추월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동일차로 주행 중 사고 - 사거리 교차로(직각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337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여 대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원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69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후행 피청구차량이 원쪽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의 오른쪽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후행하여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시도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양 차량의 손상 사전(청구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이 손상되었고, 피청구차량은 앞부분이 손상되었음)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수요소 :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사고 전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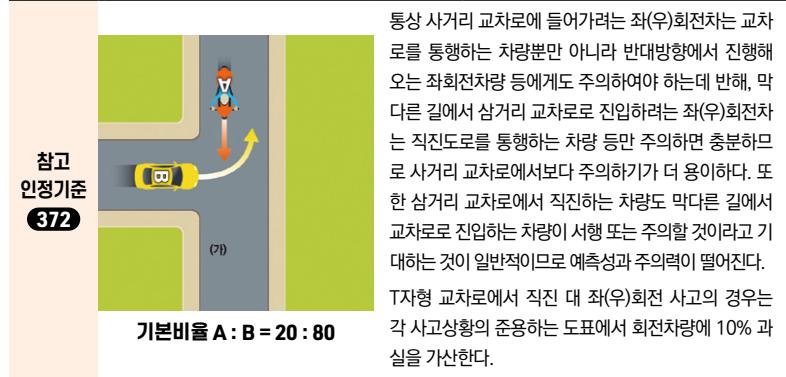
-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청구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후행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던 점,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왼쪽 공간을 넓게 비워둔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69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후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회전차량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기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 등 이륜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후행 추월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69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 후 대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9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였던 점,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인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2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8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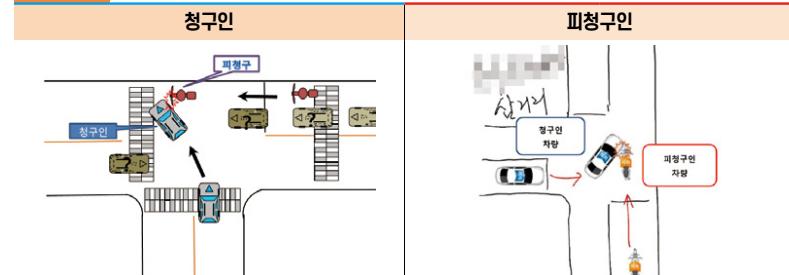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원쪽 도로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증기준 372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 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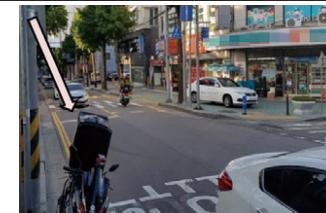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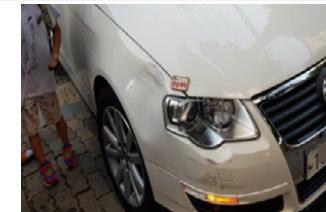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종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생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에게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 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4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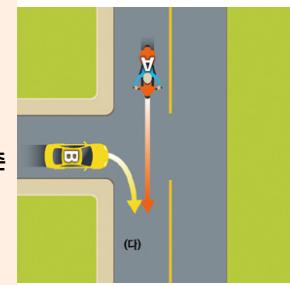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586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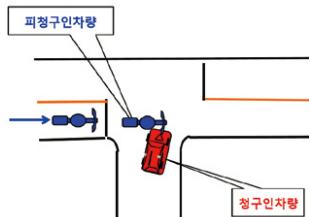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10 : 9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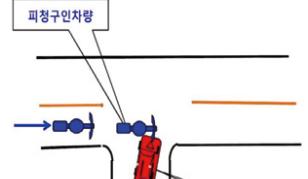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정지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이 타당함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피청구인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소로)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로)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소로에서 우회전 중인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2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은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이륜차는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51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7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11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3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종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서행불이행하며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 진입 중 원쪽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사고이며,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앞으로 좌회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점,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식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3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676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3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은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70 : 3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후진입 후 운전부주의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 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의 손상부위(운전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 상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로 확인되는 점, 양 차량의 선진입 및 일시정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는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 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5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91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의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소좌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한 점, 사고 장소는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들이 있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청구차량이 우측 일방통행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차량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과 이륜차가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337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좌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8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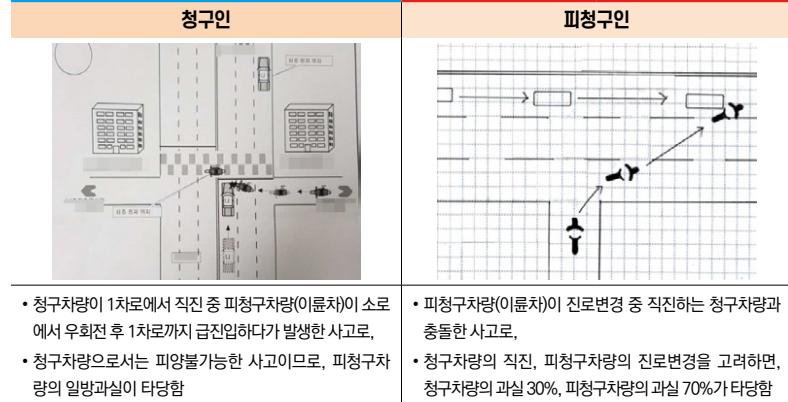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9-045461	결정비율	A(파청구) : B(청구) = 90 : 1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까지 대우 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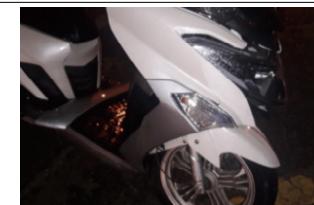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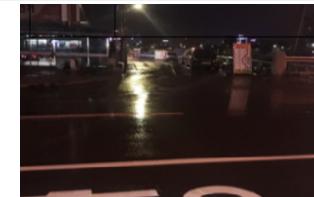
T자형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대 직진 사고의 경우는 각 사고상황의 준용하는 도표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기산한다.



주장 내용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대우회전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사고현장 애드에 기록되어 피청구차량은 1차로를 경유한 차량으로 하여튼 거기로 학이되

경적 이으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 소로에서 1차로까지 횡단 형태로 대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매우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도로 폭 등에 비추어 청구차량의 불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3은 대소로 구분이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이륜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용이하고,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진차량의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 점과 이륜차가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350에서 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대로의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1차로까지 대우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차대이륜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615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5 : 5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을 원료한 시점에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의 후방에서 추월하듯 좌회전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p> <p>•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좌회전 중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 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서행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교차로에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동영상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4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고,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좌측도로에 있는 차량이 좌(우)회전 할 것을 예측 가능하므로, 좌회전 차량 간의 주의의무 정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고, 도표 358을 준용하여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55% ● 피청구차량 45%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이륜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정체도로 사이)	직진(또는 좌회전)	참고기준 376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824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정체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6	<p>A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차량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B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 중 정체도로의 오른쪽 갓길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 중인 차량들 사이로 주행할 것을 청구 차량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고,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체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 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직진 중인 모습) 동영상(청구차량과 오른쪽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중인 차량과 정체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정체도로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정체된 교차로 사이를 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 도로에서 차량들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였던 상황과 양 차량의 충격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6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중인 차량과 정체도로에서 진행 중인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차량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직진(또는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정체도로를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정체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 이므로, 도표 37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2515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7	<p>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는 도로 진입 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 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도로를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노와진입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생점

-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청구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충돌사고로, 노와에서 진입한 차량은 진입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아파트에서 곧바로 좌회전 진입하였던 점, 이륜차의 속도위반은 입증되지 않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7은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차도를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는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이륜차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90%,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진입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77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이륜차) (기본과실)					참고기준 378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527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78	<p>A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은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이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방향에서 진행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아파트 입구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충돌한 지점)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주요 생점

-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차도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편도 1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맞은편 도로로 좌회전을 하면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으로 청구차량도 서행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출입구이므로,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78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이륜차가 차도로 진입하던 중 차도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이륜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도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7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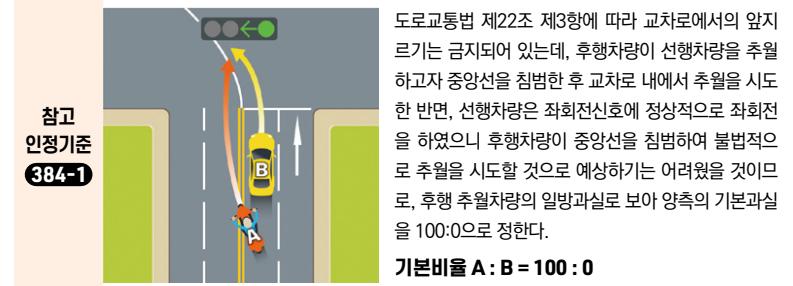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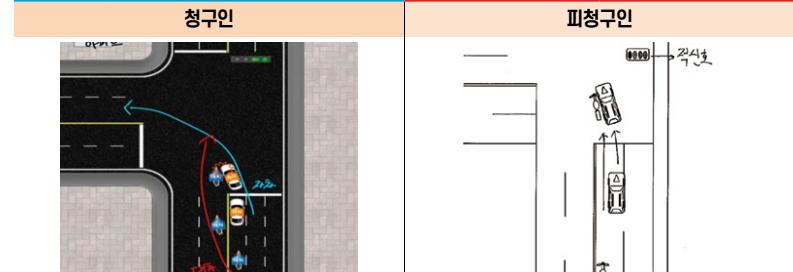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549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원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1차로를 따라 주행 중 청구차량의 원쪽으로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 양 차량의 동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후행 피청구차량의 추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오른쪽 축면 손상)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주요 장점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차량을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진행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예상하거나 피양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차량이 신호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4-1은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점, 후행 이륜차가 선행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선행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선행차량은 후행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행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선행 좌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후행 추월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8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651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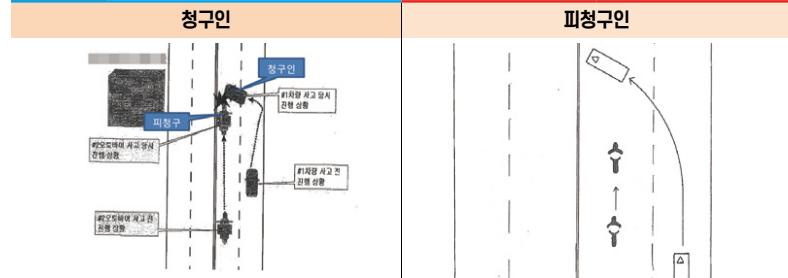
-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 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자동차와 진로변경 자동차의 기본과실은 30:70이지만(도표 252), 여기에 이를 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 서행불이행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청구차량이 무리하게 급진로변경하여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의도로 급진로변경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시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

입증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증		고통사고 경수증명	여행자 증명
※ 번	※ 차량번호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번호	
주 소	※ 접두어 및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부록면허증	※ 운전면허증 번호		
시고장지	※ 차량번호	(소유자)	
※ 운행일자	2018.01.14 17:00		
※ 운행구간			
※ 고속도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input type="checkbox"/> 차량사고
※ 고속도로	한정된 관통구간은 차량번호		
※ 표지판	※ 차량 번호 0, 부상자 0, 출발일 2,065km, 전 상황		
※ 차량번호는 차량번호와 차량번호를 모두 표기하세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편도 2차로의 도로임)
 - 피첨구차량의 손상 사진(위쪽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이륜차가 직진 중 진로변경하는 선행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8은 직진하는 이륜차와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 차량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은 30% : 70%인 점(도표 252), 여기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행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후행 직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8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40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유턴 신호에 유턴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88-2(가)	<p>(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은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차량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 진입 후행 직진차량인 A이륜차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이륜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정상 유턴 중 안전지대에서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해 추월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 중 오른쪽 청구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여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지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 통과 중 청구차량과 충돌하였음
- 동영상(청구차량이 유턴 중 피청구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유턴을 위해 진로변경 중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는 후행 이륜차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안전지대를 통과 중인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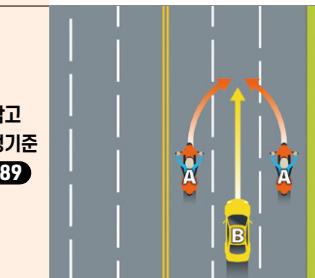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안전지대 통과 중 선행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정상 유턴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며 청구차량을 추월하려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주의의무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8-2의 (가)는 선행 차량이 진로변경 중 후행 이륜차가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이륜차는 비록 직진 운행이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행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이륜차가 통과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후행 이륜차가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할 것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지대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선행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표 388-2의 (가)와 비교하여 선행 청구차량의 유턴상황만 다르므로, 도표 388-2의 (가)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389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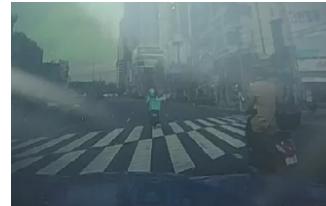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42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89	 <p>A이륜차가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도표 25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은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정상 직진 중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청구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5차로에서 직진 중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선행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동영상(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뒷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오른쪽 측면 손상)

주요 생점

- 동일방향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진로변경하는 선행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선행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3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선행 차량으로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이륜차인 점, 양 차량의 손상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89는 선행 이륜차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직진 중인 후행차량과 충격한 사고를 정한 도표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직진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은 30% : 70%(도표 252)인 점과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후행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선행 진로변경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3차로를 직진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8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900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지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0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청구차량의 후미를 피청구 차량(이륜차)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정차하는 청구차 랑을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하는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갑자기 정차하여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이지만, 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선행하던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택시정류장인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지하면서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 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택시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급정지하였음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사고 전 청구차량은 택시정류장이 아닌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4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지하였던 점, 사고시간은 주간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0은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이륜차가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함
- 본 사례는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을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0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정류장이 아닌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4차로에서 급정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55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선행 직진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1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3차로를 직진 중 동일 차로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진행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정상 직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 시점 → 3차선 차동 전용도로 위반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륜차) 추돌한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사진 - 청구인 차량 3차선 직진 - 피청구인 차량 3차선 직진 - 차량과 차량의 전용도로 위반 3 차선 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륜차) 추돌한 현장 확인 ⇒ <자동차 전용도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현장사진(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임) 경찰서 통지서(피청구차량(이륜차)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는 모습) 동영상(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및 음주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돌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인 점,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1은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피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한 점,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주취상태(면허취소 수치 초과)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130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2차로를 직진하다가 사고 발생 전 우회전을 하여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1	<p>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오른쪽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음주상태(0.08%)로 우회전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음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가해차량의 판단됨 동영상(선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노면표시 위반 및 음주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일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감속을 하는 상태였고,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의 후미추돌사고이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 우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후행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우회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충격부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391은 동일차로에서 선행하던 이륜차를 후행하던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피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동일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선행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위해서 감속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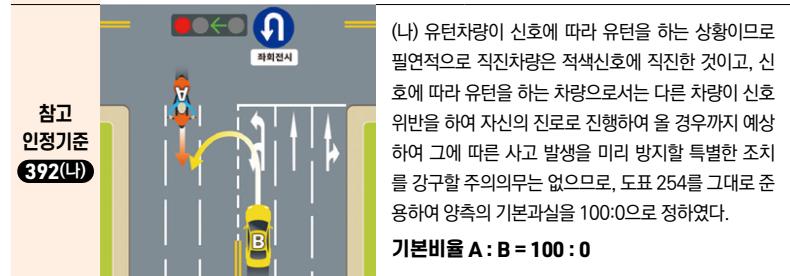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직진 대 유턴 사고 (B신호유턴)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직)직진	유턴	392 (나)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27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유턴 신호에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유턴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비록 피청구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은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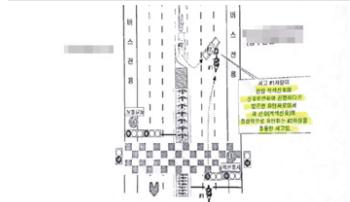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2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동사고사실확인원		교동사고 수습처	A0017-00000000
성 명	한재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보호 <input type="checkbox"/> 소아청소년보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리 1234 (화성읍) 010-43		
민족언어	한국어	영어	
통화	제작 : 홍성자	번호 : 1234567890	
사고처방	처방 : 송재희	번호 : 63-1234567890	(소아과)
발행일자	2017.04.19 23:10		
발행장소			
처방처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처방처방	<input type="checkbox"/> 처방처방
사고처방	신고 및 고지처방		
내용	90일 이내로 5. 부 3 정 둘째	증상	
사고개요	2017.04.19 23:10 경기도 화성시 금광동화정로 1234번지 일정 1000원 증상 : 2017.04.19 23:10 경기도 화성시 금광동화정로 1234번지 일정 1000원 증상 : 2017.04.19 23:10 경기도 화성시 금광동화정로 1234번지 일정 1000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신호위반 이 사고원인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차량 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 과 충돌하였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손상상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손상상태)

주요 쟁점

- 유탄시호에 유탄 중인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자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유턴신호에 유턴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2의(1)

-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며, 도표 39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10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5 : 35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392-1(나)	<p>(나) 도표 254-1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A이륜차의 과실률을 10% 낮게 보아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정상 유턴 중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까지 대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반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 우회전 완료 후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을 유턴하는 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 과실비율은 동등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 중 우회전 후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유턴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장소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피청구차량의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유턴신호에 유턴하는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후 직진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2차로를 직진 중인 상태에서 청구차량과 충격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 완료 후 진행하여 오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차량의 충돌 부위, 기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에 나타난 사고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2-1의 (나)는 유턴 중인 차량과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54-1의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유턴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2-1의 (나)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대우회전을 완료한 이후 직진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425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상태에서 유턴하던 중 선행 유턴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이후 피청구차량이 심의와 차량을 재충돌한 사고임 		
<p>참고 인정기준 393-2(나)</p> <p>(나) 도표 254-2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행 청구차량[이륜차]이 유턴 중 선행 피청구차량이 금유턴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다소 먼저 유턴 시도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차량도 당황하여 운전조작 미숙으로 심의와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이륜차]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하는 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 후 교차로 내에서 심의와 차량과 재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역주행한 청구차량[이륜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이륜차]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2차 충돌 후 전면부 손상)
- 동영상(후행하는 청구차량[이륜차]의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유턴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이륜차가 유턴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피청구차량과 후행 청구차량[이륜차]이 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1차 충격에 놀라 당황한 사실이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 유턴 중 선행 유턴하는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도어를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청구차량이 직진하여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심의와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통행방법 위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이나,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3-2의 (나)는 동일차로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이륜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54-2 (나)를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후행 유턴 이륜차의 기본과 실비율을 70%, 선행 유턴 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에서는 동일차로에서 후행 청구차량[이륜차]과 선행 피청구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393-2의 (나)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의 과잉 피양을 인정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37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흰색실선이 표시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4	<p>추돌사고인 도표 390, 391와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 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중인 청구차량을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주차가 허용되는 흰색 실선 구간에 주차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편도 1차로를 정상 진행 중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불법주차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손상 모습) 사고현장 사진(흰색 실선 구간에 주차한 청구차량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흰색실선구간인 사고 장소의 모습)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쪽면 손상)

주요 쟁점

- 주(정)차된 차량을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흰색 실선구간에 주차된 청구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주차한 갓길은 흰색실선이 있는 곳인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운전자가 0.1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4는 동일방향에서 주(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후행하던 이륜차가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추돌사고인 도표 390, 도표 391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므로, 추돌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주(정)차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흰색 실선구간에 주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4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열린 문 접촉사고 (B좌측 문 열림) (기본과실)				参考 기준 395 (가)
------------------------------------	--	--	--	---------------------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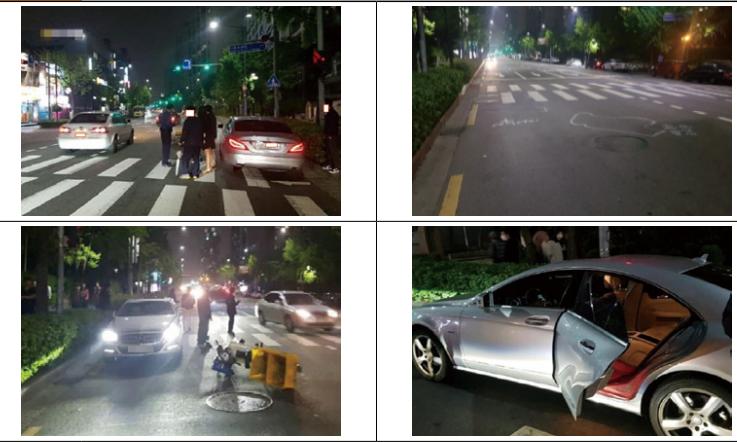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8-05902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5(가)	<p>(가) 후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평소 개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 열린 문 접촉사고인 도표 248과 동일하게 양측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 후 운전석 뒷도어를 여는 과정에서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갓길에 정차 중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하면서, 왼쪽방향으로 개문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정차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횡단보도 부근 도로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도어 손상)

주요 쟁점

- 동일방향에서 선행 정차 중이던 차량이 원쪽으로 개문하면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후행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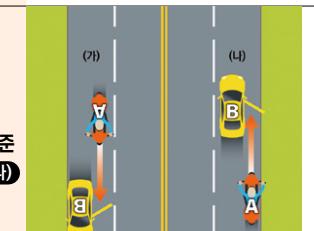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운전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주위 상가에 불이 켜진 대로라는 점에서 야간인 점은 별도의 과실비율을 감소시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5의 (가)는 정차 중인 차량이 왼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후행하는 이륜차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평소 개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8과 동일하게 좌측 개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후행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운전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5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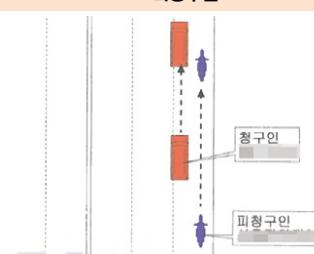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열린 문 접촉사고 (B우측 문 열림) (기본과실)						참고기준 395 (나)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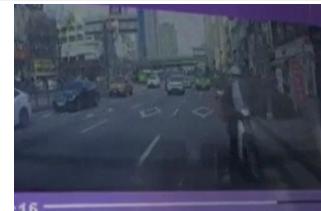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1811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의 4차로에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개문하다가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5(나)	 <p>(나)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 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문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중인 B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원쪽문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A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 정차 후 동승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리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오른쪽으로 추월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선행 청구차량이 정지 후 오른쪽 뒷문을 열면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정지 신호 없이 정지하였고, 오른쪽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개문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 정차 후 오른쪽 문을 열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입증 자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후행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뒷문 손상)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륜차)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이 정차 후 오른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 정차 후 오른쪽 문을 열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 후 동승자 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문하던 중 후방에서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진입한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5의 (나)는 정차 중인 차량이 오른쪽 문을 열면서 후행하는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395의 (7)와 달리, 차량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원쪽문보다는 오른쪽 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위험을 높인 이륜차의 과실을 10% 높여서, 오른쪽 개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후행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조수석 뒷도어를 개문하면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5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389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일부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중 원쪽 도로에서 진행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인정하나, 청구차량의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증수번호 제2019-000-000
일자	2018.04.20 10:19
장소	교차점 번호: 00000 주소: 경기도 95-00000 (초록번호: 000)
운전자 성명: 차종명 나이: 35세	승용차 범주: 경상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범주: (승용)	운전자 성명: 차종명 나이: 35세
발생일자: 2018.04.20 10:19	운전장소: 경상
증명장소:	차종명 나이: 35세
사고유형: ■ 좌회전 □ 차량단독 □ 차량사망 □ 기타	운전장소: 경상
사고원인: 강로변경 위반	운전장소: 경상
피해내용: 침범 사용 0 무상 0 영 불편: 한 상상	운전장소: 경상
※ 100%증가의 속도 부여하고 #김자랑 조수석 속단 부검이 충돌한 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륜차)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륜차)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로, 이륜차인 피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면서 좌회전한 점,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 보이기는 하나 거리상 청구차량이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8-1의 (가)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이륜차가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 중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8-1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574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중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우회전한 침입</p> <p>•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우회전한 침입</p> <p>•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불상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추월하는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p>•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륜차)이 3차로에서 직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은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였고, 청구차량은 노면표시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이륜차)의 손상 사진(왼쪽 측면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사고원인으로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악도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주요 쟁점

-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와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중인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의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중 오른쪽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점, 피청구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 도표 398-2의 (나)는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직진차로에서 추월형태로 우회전한 차량은 도로 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직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청구차량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398-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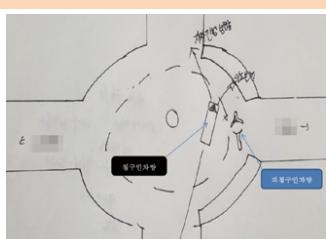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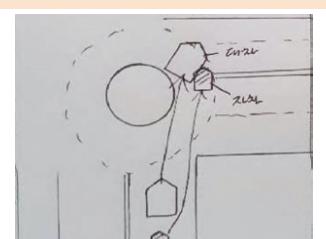
차대이륜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회전2차로 회전대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A회전(회전2차로), B진로변경(회전1→2차로))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회전교차로	회전(회전2차로)	진로변경 (회전1→2차로)	참고기준 399-1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5522	결정비율	A(파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 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399-1(가)	 <p>(가) 도표 263을 준용하되, 이륜자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선행하여 주행 중 후행 피청구차량(이륜차)이 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청구차량의 추월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 내에서 청구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회전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회전교차로 내에서 오른쪽으로 급조향하는 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 실이 타당함

2.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사고 장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임)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1차로를 벗어나 2차로 방향으로 우회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경위 및 충돌 부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399-1의 (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로, 도표 263을 준용하되, 이륜자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2차로에서 회전한 이륜차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청구차량(이륜차)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399-1의 (가)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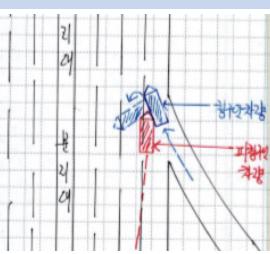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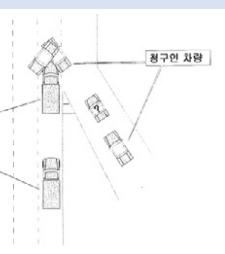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839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다가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1	<p>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본선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합류 중 고속도로의 본선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합류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급진입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해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로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본선도로로 진입 중본선도로의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본선도로와 합류도로의 모습)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충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차로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1은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본선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598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정체구간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다가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1	<p>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려다가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 본선도로의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정차 후 급출발하면서 정지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청구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정체구간에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합류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본선도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장소는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은 합류하는 청구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합류도로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합류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청구차량 또한 차량 정체 중인 합류도로에서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청구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청구차량이 다른 정체차량으로 인하여 차로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1은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본선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합류하던 중 본선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50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들의 정체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합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고속도로 차로 감소도로 사고

차로 감소도로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50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4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2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서행 직진 중이었고,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류구간에서 피청구차량이 합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합류 중 청구차량이 갑자기 직진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양 차량 과실은 동등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본선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합류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 중 합류차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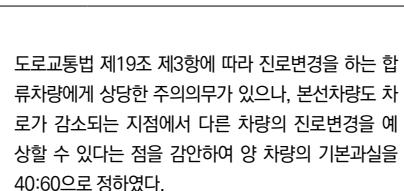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구간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합류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합류 시도를 미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현장은 차로 감소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2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시 주의의무)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의 차로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합류차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고속도로 차로 감소도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516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양보표시가 있는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2	 <p>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p>• 청구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면서 4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이 이미 합류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사고 장소는 5차로가 사라지는 합류구간으로, 청구차량이 합류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4차로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합류를 하던 중 정상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p> <p>• 청구차량의 부적절한 합류방법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p>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차로감소 구간에서 본선차로를 직진하던 차량과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합류차로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행한 합류차로의 노면에는 양보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이 진행하던 합류차로의 노면에는 양보표시가 있음

결정 이유

-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를 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진행한 합류차로의 노면에는 양보표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2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시 주의의무)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합류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본선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의 차로 감소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본선차로로 합류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2를 적용하여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진행한 차로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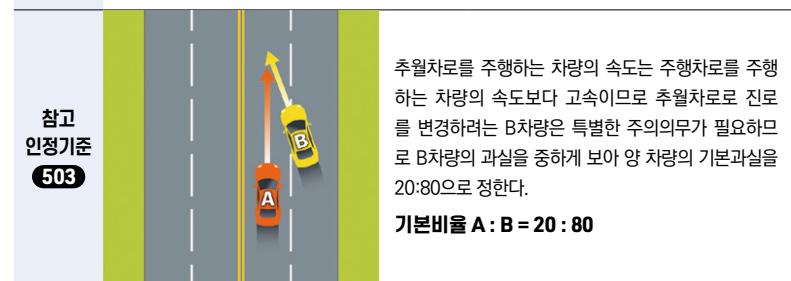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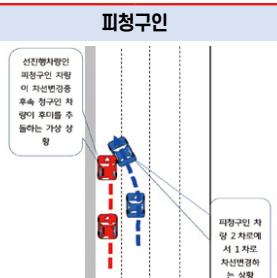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013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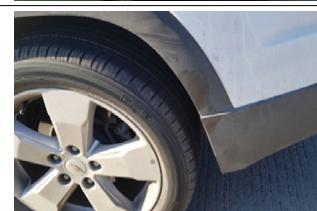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원료한 시점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 등에서 진로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일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동영상을 보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선행한 상태에서 진로변경한 점, 양 차량 충격 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3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상 추월차로(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여,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추월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 추월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03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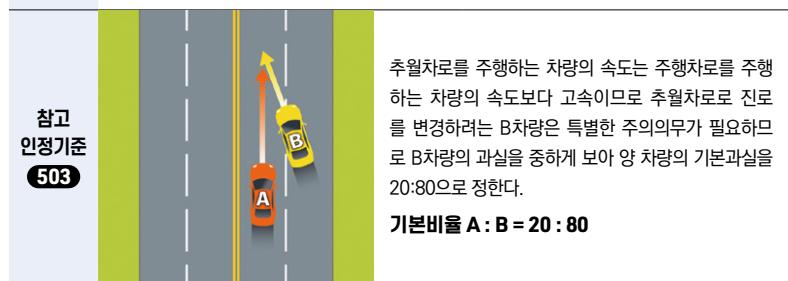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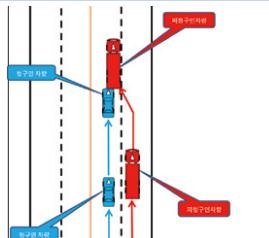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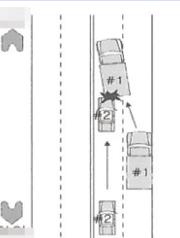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49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후행했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원쪽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로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차량의 부적절한 제동으로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 동영상(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모습)
- 동영상(양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앞부분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선행 피청구차량의 추월차로 진입 정도와 충돌부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인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차량의 뒷부분이 충돌되었음

결정 이유

-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상당거리 이전부터 진로변경신호를 하면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3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상 추월차로(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차로(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추월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여,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추월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추월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추월차로를 직진 중 추월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3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피청구차량 70%

고속도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주행차로 진로변경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50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563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주행차로인 4차로로 진로변경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4	<p>주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 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인 A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에서 4차로로 서행하여 진로변경 중 피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으로 진로변경한 점, 후행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한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은 동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4차로를 정상 진행 중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의 실선구간에서 4차로로 급진로변경 하여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4차로로 급진로변경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를 직진 중인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 중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손상)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를 직진 중인 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갓길인 5차로에서 주행차로인 4차로로 진로변경 중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후행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속도를 감안할 때 피청구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4는 주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방법)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인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진로변경한 선행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진로변경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주행차로로 진로변경 중 주행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4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청구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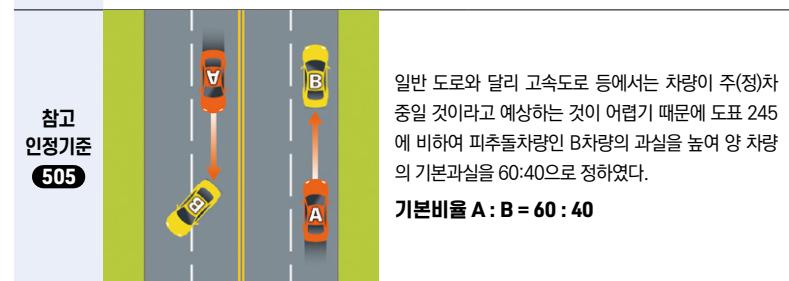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59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의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을 2차로를 주행하는 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후방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고장 표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없이 2차로에 정차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5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선행차량이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주·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높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고속도로 추돌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20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선행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던 중 후행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5	 <p>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에 외곽고속순환도로의 5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정차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승자가 순간 흔들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차량은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 갓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비상등을 점멸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청구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야간에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의 안전조치 정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시야가 제한된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야간에 피청구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이었고, 비상점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동승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임

결정 이유

- 야간에 외관순환고속도로의 끝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만 점등하고 후방 안전조치 없이 정차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의 안전조치의 정도(비상등 점등, 후방에서 수신호)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5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는 선행차량이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주·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245에 비하여 피추돌차량의 과실을 높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인 선행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5를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사고 시간이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기는 하나, 피청구차량은 비상등을 점멸한 상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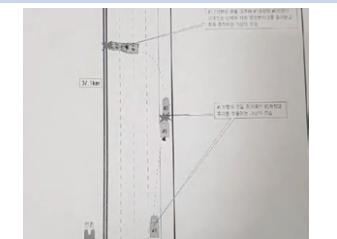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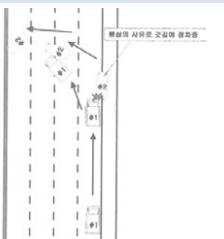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36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6	 <p>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전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운전자는 몸이 불편하여 청구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고,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출음운전을 하여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주행 중 4차로와 갓길을 점유하며 정차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갓길과 4차로를 점유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속사고 심사번호 제2018-002610
성명 : 김철아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읍 거제로 123	
운전면허	
신고처장 : 청구인 (부제자 : 피청구)	
신고일자 : 2018-06-15 08:40	
발생장소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읍 거제로 123	
사고구형 : ■ 정차 ● 차량단속 □ 차대사용 □ 기타	
사고현장 : 신천온천역무터미널	
운행구간 : 도로 : 새마을 0 ~ 부산 1 경계 : 협재동	
사고개요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접촉 부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로에 선행하던 차량이 없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갓길로 진행한 점, 청구차량의 운전자는 몸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우측 갓길로 정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6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갓길에 정차한 피추돌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전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갓길에 주·정차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부득이한 사유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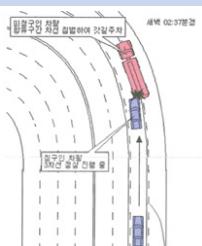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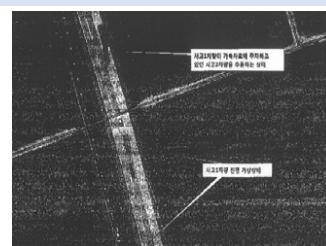
고속도로 추돌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76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90 : 1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3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주차 중 3차로를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6	 <p>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의 3차로를 진행 중 갓길에 불법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야간에 출음쉼터부근의 갓길에서 차로를 일부 점유하며, 차량의 통행을 절대적으로 방해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 중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청구차량을 추돌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고속도로 신호등 없음 갓길 주정차 중 피추돌 506 2019.01.25 02:43 날씨: 맑음 속도: 14.1 25.01.2019 AM 2:37:45
	• 사고현장 사진(3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갓길에 주차한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추돌 사고로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요소: 피청구차량이 야간에 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주차 중이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갓길에 주차 중 3차로에서 후미를 강하게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속도를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선행차량들은 피청구차량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주행한 점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6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 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갓길에 정차한 피추돌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갓길에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결정 이유

- CCTV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야간에 청구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 중인 피청구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속도를 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주차 중이었던 점, 청구차량의 선행차량들은 피청구차량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주행한 점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06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 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갓길에 정차한 피추돌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갓길에 주·정차 중인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차 중 3차로에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506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3차로를 일부 점유하여 주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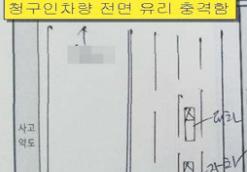
고속도로 낙하물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54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된 돌이 후행하던 청구차량의 전면유리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08			<p>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3차로를 정상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청구차량의 전면유리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였으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진 사실은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차량과 관련이 없는 사고임

입증 자료



- 동영상(진로변경하는 선행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물이 날아오는 모습)
 - 원고차량의 손상 사진(낙하물에 의해 청구차량의 전면 유리가 손상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고 내용이 일치됨)

주요 쟁점

- 선행 차량의 적재함에서 날아온 낙하물이 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운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청구차량을 충격한 돌이 피청구차량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피청구차량은 낙하물과 동일한 돌을 운반하고 있었고, 돌의 운동 궤적상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 있었던 돌이 낙하하면서 후행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함
 - 도표 508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써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도로상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선행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낙하물을 떨어뜨린 선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선행 피청구차량의 적재함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후행하던 청구차량을 손상시킨 사고이므로, 도표 50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갓길 진로 변경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3567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청구차량이 갓길을 직진하던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511	<p>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A차량은 진로변경을 하여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B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4차로를 주행 중 3차로의 피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선행차량으로 갓길로 진로 변경하려는 순간 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로 진입하려는 순간 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3. 고속도로의 사고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결정 이유

- 갓길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접촉사고로, 청구차량이 갓길로 주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11은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은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직진중인 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고려하여 갓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3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1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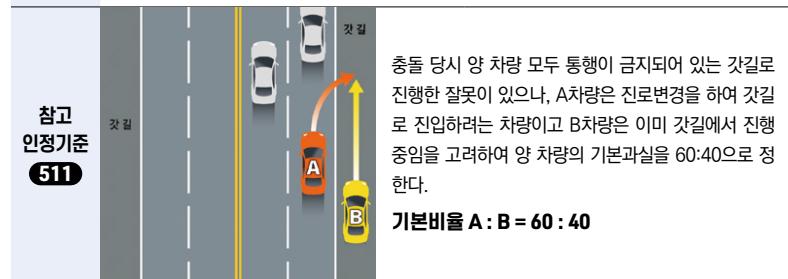
차대차 갓길 진로 변경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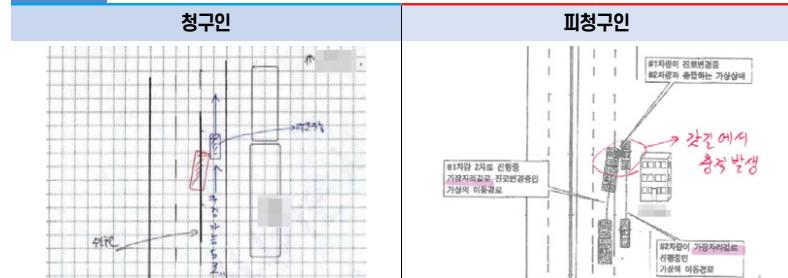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38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갓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처량이 3차로를 직진 중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처량과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처량이 실선구간에서 청구처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처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처량이 갓길로 진로변경 중갓길에서 주행 중인 청구처량을 충격한 사고로,
 - 사고 장소는 갓길로, 차량의 주행이 불가한 곳이고, 피청구처량이 갓길로 진로변경 중갓길을 주행 중인 청구처량과 충격된 사고이며 양 차량의 과실은 동일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월		접수번호 수신번호	경찰서 2019-00000000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인인정	[]		
사고장소	장소: [] []	연도: [] []	소재지: [] []
발생날짜	2018년 05월 13일		
발생장소	[]		
사고종류	● 자전거 []	● 차량단속 []	● 차대사용 []
사고내용	[] []		
피해자명	성명: [] []	성별: [] []	연령: [] []
사고개요	[] [] []		



- 동영상(사고 발생 전 갓길을 주행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근접거리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

주요 쟁점

-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갓길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였음

결정 이유

- 갓길을 주행하던 청구차량과 2차로에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청구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의할 때 청구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한 갓길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청구차량도 주행이 불가능한 갓길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511은 충돌 당시 양 차량 모두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갓길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진로변경하는 차량은 갓길로 진입하려는 차량이고, 직진중인 차량은 이미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고려하여 갓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511을 기초로 과실을 검토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피청구 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피청구차량 70%